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9-50 호

2019년 10월 17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925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26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27호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28호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29호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0호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1호	전라남도 수산업 · 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2호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3호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4호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5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6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7호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8호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0호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1호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2호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3호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4호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5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6호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7호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8호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 ·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49호	전라남도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0호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1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2호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3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4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5호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6호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7호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59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960호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20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5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992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99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1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3호	측량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공윤위 공고 제2019-6호	전라남도위원의 주식매각 신고 공고

◆ 시군 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9-186호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29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30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19-24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고시 제2019-19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9-189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공고 제2019-189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19-149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9-2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19-197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화순군 고시 제2019-128호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19-129호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9-140호	해남 군관리계획(도서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암군 공고 제2019-1246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춘양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47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역리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48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남풍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9-1251호	영암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풍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공람 공고
함평군 공고 제2019-1055호	함평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25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4.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원단은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26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를 “제5조와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휴원) ①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 추석 연휴기간
 3. 매월 첫째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
- ②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 피해 복구, 산림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목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 제한기간과 그 대상을 정해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과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명예도민
15.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
16. 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
17.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9.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20.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
21.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사자의 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 단서 중 “다음해 2월말”을 “다음 해 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또는 매표시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5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목원 전문가 양성) 도지사는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소에서”를 “제1항에 따른 매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를 “때”로,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료입장)”을 “(시설사용료와 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제6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도 명예도민
14.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
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6.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17.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사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체험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거나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사람
3.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행위 등으로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음주 행위, 흡연 행위
3. 야행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4. 행상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행위
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 그 밖의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쓰레기 투기 행위
9.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4조) 중 “사람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상당하는” 을 “상응한” 으로, “조치 하여야” 를 “조치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삭제 2007. 11. 9)” 를 “(편의시설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관람객의 편익을 위해 수목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필요한 세부사항”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고
어른	2,000	1,500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군인	1,500	1,000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
어린이	1,000	500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생

※ 비고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그 일행을 말한다.
2. 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남도패스 카드 사용자와 완도투어패스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의 입장료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대인 (만 19세 이상)	소인 (만 18세 이하)	비고
입장료	1,400원	900원	남도패스, 완도투어패스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사용시간	금액	비 고
주차장 요금표	대형차	1대/1일	5,000	• 당일 개원시간 기준 사용료 - 이후 추가 징수
	소형차	1대/1일	3,000	
	경 차	1대/1일	1,500	

[별표 3]

체험료(제6조제4항 관련)

1. 목공예 체험

(단위: 원)

체 험 명	단가	소요 시간
생태공예 소품 만들기 (목걸이, 곤충 등)	3,000	30분
	5,000	1시간
목공예 소품 만들기 (소형수납장, 다과상, 의자 등)	10,000	1시간
	30,000	2시간
	50,000	3시간

2. 숲 해설 체험

(단위: 원)

체 험 명	단 가	소요 시간	비고
수목원 난대림 숲 해설 체험	10,000	1시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숲 해설 체험의 경우에는 무료
	20,000	2시간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27호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다. 운수시설
 - 라. 숙박시설
 - 마. 위락시설
 - 바.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28호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서비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창업 교육 및 법률 등 상담 지원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

자로 선정된 자(이하 “치유농업 사업자” 라 한다)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등)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협의회)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4조에 따른 육성 사업
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4. 제6조에 따른 지원
5. 제7조에 따른 평가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육성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육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29호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 및 면제받은 제품의 수출현황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기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별지 제2호 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 조 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 조 자	제조국기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 강 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공단	→	확인 공단	→	면제 확인서 작성 공단	→	면제 확인서 발급 공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기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 강 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에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0호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 을 “6월” 로 “누리집(홈페이지)” 을 “누리집” 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하고 연구개발장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혁신경제과장” 을 “연구개발장비 담당부서의 장” 으로 “총괄 부서장” 을 “총괄부서의 장” 으로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을 “전담기관부서의 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1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
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
3. 수산물가공업 육성, 수출 촉진,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4. 어업인·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조업 중 발생한 어선의 사고 시 해상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2호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 내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 출자·출연기관
2. 대학교
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3호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목표와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 및 기술개발·연구 계획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창업 및 기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상담
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육성
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실·국·원·단·본부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전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4호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출자·출연기관

제5조(건설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 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 적합한 건설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건설신기술을 포함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
3. 발주청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종별 건설신기술 적용방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건설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 요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선정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청은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기존 기술에 비해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 중 건설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건설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급공사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신기술 표시)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에게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건설신기술개발자 육성,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신기술개발자는 도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 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건설신기술개발자
2.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등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5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전반” 을 “운영”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개관 및 휴관)” 을 “(개관과 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섬진강어류 생태관” 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으로,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를 “개관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제2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제2조제2항제3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정하는” 을 “인정하여 지정한”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 을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 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빈 및” 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빈이나” 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을 “경우 관람시간과”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태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

가. 어른(20세 ~ 64세): 3,000원

나. 청소년(7세 ~ 19세): 2,000원

2. 단체(20명 이상)

가. 어른: 2,500원

나. 청소년: 1,500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만7세 ~ 만12세)”를 “(7세 ~ 12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만4세 ~ 만6세)”를 “(4세 ~ 6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15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만7세 ~ 만12세)”를 “(7세 ~ 12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만4세 ~ 만6세)”를 “(4세 ~ 6세)”로 한다.

생태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를 포함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세 이하”를 “6세 이하”로,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5조제8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제5조제1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한다”를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술이 만취 된”을 “만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고성을 지르거나 난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제5호 중 “도지사”를 “그 밖에 도지사”로, “시킬 수 없다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7조 중 “관람자가”를 “관람자는”으로, “훼손 하였을 때에는”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대관허가)”를 “(시설의 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생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를 “도지사는”으로, “기여”를 “이바지”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를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관 시설

을 대관”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시간)” 을 “(대관 신청과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이하 “대관자” 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대관 신청이 대관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관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 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에 따른 관람 시간내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예정일 전까지 대관료를” 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관료를 대관일 전날까지” 로, “납부 하여야한다” 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전시실 :” 을 “기획전시실:”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야외행사장 :” 을 “야외행사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나. 생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가 주최하는 행사와” 를 “전라남도 시장·군수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를 “인정한 경우에”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해당되는” 을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때” 를 각각 “경우” 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관자는 생태관의 시설과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으로, “때” 를 “경우” 로,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 를 “복구”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지사가” 를 “도지사는” 으로, “단체에게 생태관의 시설” 을 “단체에 생태관 시설의” 로,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할” 을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에 규정되지” 를 “조례에서 규정하지”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련된” 을 “관련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 를 “이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험학습장(세미나실): 30,000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를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자” 를 “그 밖에 관람자” 로, “시설 등” 을 “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을 “편의시설은” 으로, “운영하게 할” 을 “운영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6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를 “관리와 운영에” 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날연휴기간, 추석연휴기간” 을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정하는” 을 “정한”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 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을 “경우 관람시간과”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어 른(20세~64세) :” 를 “어른(20세 ~ 64세):” 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소년(7세 ~ 19세, 초등학생 포함): 2,000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체(20명 이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어 른 :” 을 “어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소년 :” 을 “청소년:”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 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를 “경우에는” 으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6세이하” 를 “6세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이상” 을 “65세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제5조제13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관람자에 대하여는”을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명 및”을 “조명을 이용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다른 관람자에게”를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로 한다.

제10조 중 “관람자는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을 “관람자가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7호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의 지원
2. 교통비,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2.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 방안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 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장
 -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8조)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공공시설(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건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8호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업 경영의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환경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목적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0호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
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 종합·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수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제때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용한다.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3.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경제상황 조기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
 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관련 부서의 조치 계획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위기 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이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③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경우에는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통보받은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은 대응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도록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시행) ① 도지사는 고용 및 민생안정 시책 발굴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경제위기 대응시책은 단계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상황 및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뢰)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경제상황 점검 및 판단
2. 경제위기 대응
3. 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군 및 관련 단체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
4.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5.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 2명
2. 도 경제 관련 실·국·본부장
3. 도내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남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관련 실·국·본부장,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실무지원단) 위원회는 경제상황 진단 및 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1호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레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해양레저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3.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 상품 개발
3. 해양레저 특화 지역 조성
4. 해양레저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추진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양레저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해양레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제5조의 사업
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저 업무 담당 국장·실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2호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구1길 115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방문자안내소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내에 매점 등 편의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2.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전라남도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 바.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차.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카.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파.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입 장 료

(단위 : 원/1일)

구 분		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인/1일	2,000	1,500	※ 단체 20명이상 ※ 입장료 면제대상 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⑥ 다자녀 가정인
	청소년	1인/1일	1,500	1,000	
	어린이	1인/1일	1,000	500	
	군인	1인/1일	1,500	1,000	
	장애인	1인/1일	무료		
	지역주민	1인/1일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1인/1일	무료		
	다자녀가정	1인/1일	무료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이용단위	사용료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숲속의 집	49㎡ (1가족실 15평형)	1동/1일	100,000	80,000	숲속의 집, 회의실 사용료 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112㎡ (다가족실 34평형)	1동/1일	180,000	160,000	
(방문자안내소) 회의실	1개소	1실/1일	60,000	60,000	
주차장	경형	1일/1대	1,500	1,000	
	소형, 중형	1일/1대	3,000	2,000	
	대형	1일/1대	5,000	3,500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고
입장료	장애인	중증장애인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 집 객실이용 요금감면
		경증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요금의 100% 할인	
		4~6급	요금의 5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5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집, 방문자연나소	장애인	중증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1가족실)만 해당
		경증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6급	요금의 30% 할인	
	기초수급자	요금의 2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3호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 · 편리성 · 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 · 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4호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 지역과 도 인접생활권(다른 시·도 포함)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1. 관내요금: 대중교통(시·군내버스)요금 이내
2. 관외요금: 대중교통(시외버스)요금 이내
3. 심야요금(00:00~04:00):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요금의 2배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5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
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3. 제9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전라남도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업정책분과
2. 친환경분과
3. 식량원예분과
4. 농식품유통분과
5. 축산분과
6. 농업기술분과
7. 산림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 협의회를 둔다.

-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범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6호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을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내외의 위원으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7호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의 주거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종합계획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조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9조(임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도민 교육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도민의 권리구제 지원
5.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전라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라남도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주택 조례」 중 제4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주거종합계획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8호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악취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6조(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기술력·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에 시·군, 사업장,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 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① 축산시설 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은 별표 1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보급하고, 이를 위한 보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축사 청결유지 지원)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악취 관리)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도지사는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신설·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생활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사업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ppm)	비 고
		공업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8	스티렌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10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13	톨루엔	10 이하	
14	자일렌	1 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16	메틸아이스뷰틸케톤	1 이하	
17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18	프로피온산	0.03 이하	
19	n-뷰틸산	0.001 이하	
20	n-발레르산	0.0009 이하	
21	i-발레르산	0.001 이하	
22	i-뷰틸알코올	0.9 이하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49호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사(尊嚴死) 문화 조성”이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남은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확산 조성사업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관련 교육·홍보사업
4.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에 관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센터·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호스피스센터 및 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관계 기관 협력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호스피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0호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보수체계 일원화 등)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4951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시·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시·군 및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농축산식품국장
3. 해양수산국장
4. 동부지역본부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라.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시·군과의 협력)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2호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별표 4”를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직속기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제외) 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제4호 관련)

시설명	사용유형	기 준 (면적,좌석수,사용시간)		사용료(원)	비 고
강의실 (세미나실, 분임실, 회의실)	강의, 연수회, 협의회, 동아리활동, 기타행사	240㎡ 이상	1회당	20,000	· 1회 기준시간: 4시간 이하 · 기준시간 초과 시 : 기준시간 금액×2 · 토요일공휴일 사용 시: 기본시설 사 용료의 20% 가산 ·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 용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부 대시설 포함) ·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1회는 4시간 기준) - 피아노 1화: 30,000원 (별도 조율 시 사용자 부담) - 영상기 1화: 20,000원 - 특수조명 1대: 20,000원 - 음향반사판: 30,000원 - 전광판: 20,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240㎡ 미만 ~ 120㎡ 이상		10,000	
		120㎡ 미만		5,000	
공연장(실) (강당)	공연, 각종행사	500석 미만 ~ 300석 이상	1회당	100,000	
		300석 미만		50,000	
체육관	체육활동, 각종행사	4시간초과		100,000	
		4시간이하		50,000	
전시장(실)	전시회, 기타행사		1일, 1실	20,000	
숙박시설	숙박시설 이용		1인 1실 (1박2일 기준)	1인당 4,000	

비고

1.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이용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의 1/2를 감면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사용유형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5]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금액단위: 원)

대상	1일 사용료 (8시간 기준)	반일 사용료 (4시간 기준)	분할 사용료 (전체 면적의 1/2)		비고
			1일 사용료 (8시간 기준)	반일 사용료 (4시간 기준)	
다목적홀	5,200,000	2,600,000	2,600,000	1,300,000	2,864.83㎡
공연장	900,000	450,000	-	-	1,094.59㎡
회의실1~5	150,000	75,000	-	-	73.5㎡
회의실6	520,000	260,000	-	-	253.05㎡
회의실7~10	50,000	25,000	-	-	41.29㎡
콘코스홀 1	300,000	150,000	-	-	1,117.28㎡
콘코스홀 2	220,000	110,000	-	-	830㎡
야외 서쪽마당	40,000	-	-	-	1,500㎡

- 토·일요일, 야간(18:00~22:00)은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 및 행사준비, 철거, 리허설을 위한 사용료(사용기간의 전날 및 익일)는 50% 감면
- 사용료는 4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하되, 4시간 이내 사용은 반일사용으로 보아 1일 사용료의 1/2 적용
- 사용 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 징수
- 야외 서쪽마당의 경우 다목적홀 또는 공연장 이용 시 추가 대관(별도대관 안함)
-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	비고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	비고
전광판	1회 (4시간 기준)	20,000원		수강용 의자	1일, 1인용	1,000원/개	추가사용 시
특수조명	1대 (4시간 기준)	20,000원		사회대 /연사대	1일	6,000원/개	추가사용 시
피아노	1회 (4시간 기준)	30,000원	별도 조율시 사용자부담	LCD 프로젝터	14,000 ANSI/1일	300,000원/대	다목적홀(2대), 공연장(1대)
원탁 테이블	1일	20,000원/개		노트북	1일	40,000원/대	
연회용 의자	1일	2,000원/개		디지털 사이니지	1일	40,000원/대	
수강용 책상	1일, 3인용	6,000원/개	추가사용 시	이동식 무대	1일	20,000원/개	

- 마이크, 앰프, 일반조명은 기본사용료에 포함

비고

1.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이용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의 1/2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순천시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3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보직·휴직·복직·의원면직·직위해제”를 “보직·휴직·복직·겸임·의원면직·직위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4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노동조합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5호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5. 추진 성과 및 평가
6.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지방문화원 등 관계 기관·단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6호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2. 수탁기관 갱신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사무의 민간위탁이 결정된 후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수탁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책무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

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본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7호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으로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
2. 안전사고 예방 방안
3. 안전 점검 및 조치
4.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관리·조치 방안
2.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및 안전 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의 전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시행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 원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
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석면 정보관리)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59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하 “위기학생”이라 한다)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 충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부분 운영제) 또는 전부(전일제)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내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학교와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5. “공립 대안학교”란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3. 협력체계 구축
4. 대안교육 위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및 숙려제 운영 지원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3. 교원연수
4.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조례 제4960호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所定) 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제5조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조(「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0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장학생선발공모)”를 “(장학생 선발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선발예정일 2개월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제4조제3호 중 “선발기준·임원”을 “선발기준·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졸업 후 의무 및 그 위반시 처리

제4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학 2년이상”을 “대학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

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2.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제7조의 제목 “(선발)”을 “(선발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과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실기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한 3개 이상의 과목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③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발결과와 통지)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금액이상”을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장학생관리)”를 “(장학생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장학생 별로 작성해 유지·관리하고, 장학생 지원부터”로,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을 “마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으로,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서식)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서식)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생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서식)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사 진 (3.5×5cm)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지원자와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재정보증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 ○ ○ 직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장학생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 대리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 . . .	
수 신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전라남도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증 서 번 호 : 증서수여일자 :	그 밖의 사항	
붙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끝			
전 라 남 도 지		사	

[별지 제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과 제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장 학 생		신 청 액				지급정지가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 ○ 학 교

장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갑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주소		세대주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특기사항

(갑2)

3. 재정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관 계	
① ②						
4. 관리기록						
지원 ~개발	학 교 명		학 년		전공학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당시 학교성적	평균 점(석차 /)
장학금 지 급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갑3)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적 요

6. 임용사항

임 용				임 용 개 기	임 용 포 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 관 (계 단위까지)	(사유)	(사유)

(갑4)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호 해당자					
				지급총액	
년 월 일	반납액	잔액	년 월 일	반납액	잔액
8.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학교()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 .

분류기호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드립니다.

재학생본인		지 급 일 시	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 .

분류기호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 명	학 과	학 년	비 고

2. ()년도 ()학기 (분기)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분	일 수
				총수업일수	
				출석	
				결석	
				결석율(%)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		석 차			

○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 .

분류기호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의 지급정지(중단)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학 년	비 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0호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 인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 재 지	비고
주식회사 어울림	김*기	전남2019-	도시림등 조성	2019. 10. 15.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길 126	
주식회사 다솔임업	서*성	전남2019-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019. 10. 15.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길 70, 지하1층	
		전남2019-	도시림등 조성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5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선암사지구 하수관로					
사업시행자	순천시장					
사업목적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방류하천 수질 오염 방지					
위 치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일원					
사업내용	오수관로 1.760km					
처리방식	승주공공하수처리장(2,500㎥/일) 유입처리					
처리구역면적	17.8ha					
사업시행기간	2019년 ~ 2021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명
	계		8,498,434	352.0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종	26,731	45.8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임	8,466,645	276.0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755-1	잡	4,780	22.4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754-2	도	278	7.8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778	박영규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순천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61-749-6507)

전라남도 공고 제2019-992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
(고흥군 소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소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1. 예 고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흥군 소재)
2. 목 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정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3. 대상문화재 : 3개소
가. 신규 : 2개소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전라남도 기념물 제214호	고흥 대강리의 느티나무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276
2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	고흥 김봉만선무원종 공신녹권과 신위단비	고흥군 두원면 예회리 산52, 산53-2

나. 변경 : 1개소

○ 변경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전라남도 기념물 제128호	고흥 쌍충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2

○ 변경내용

- 제1구역 → 제5구역으로 변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50전, 2250-4도, 2250-2도, 2256전, 2252-12전, 2252-11도, 2252-1전, 2252-2전, 2253-7임, 2252-10도, 2253-5임, 2253-3임, 2253임, 2253-1임)
- 제2구역 → 제1구역으로 변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50대, 2204대, 2204-1대, 2205-1대)

- 제3구역 → 제1구역으로 변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92-8잡, 2203-2제, 2792-4대, 2792-3대, 2792대, 2789도, 2794도, 2789도, 2792-5잡, 2792-6잡, 2792-7잡, 2203-1도)
- 기존 허용기준은 폐지

4. 예고기간 : 2019. 10. 17. ~ 2019. 11. 18. 까지

5.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331

○ 고흥군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연락처 : 전화 061-830-5997

6. 의견제출 방법 : 예고기간 내에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유선, 방문 등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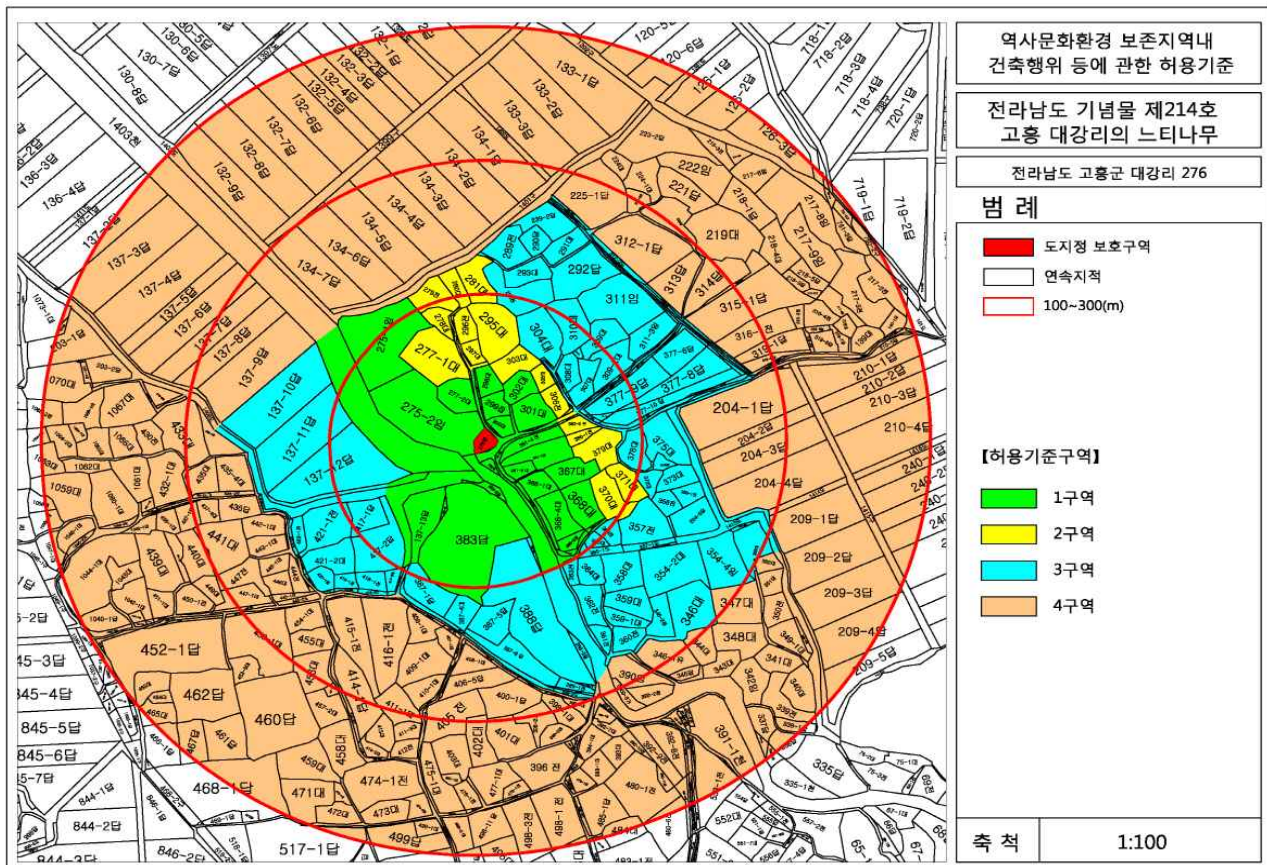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기념물 제214호 고흥 대강리의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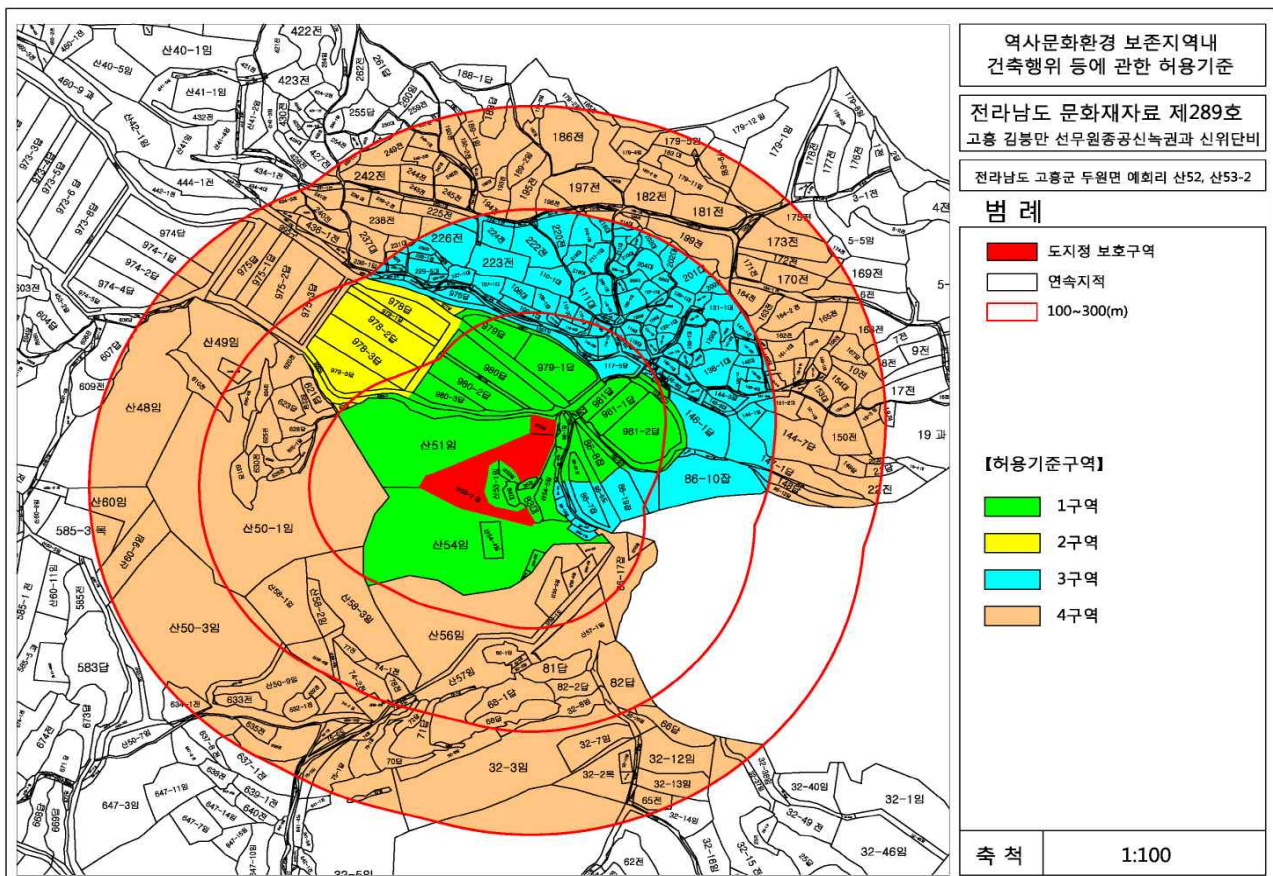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4구역	■ 고흥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0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임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 고흥 김봉만 선무원종공신녹권과 신위단비 역사문화환경 보
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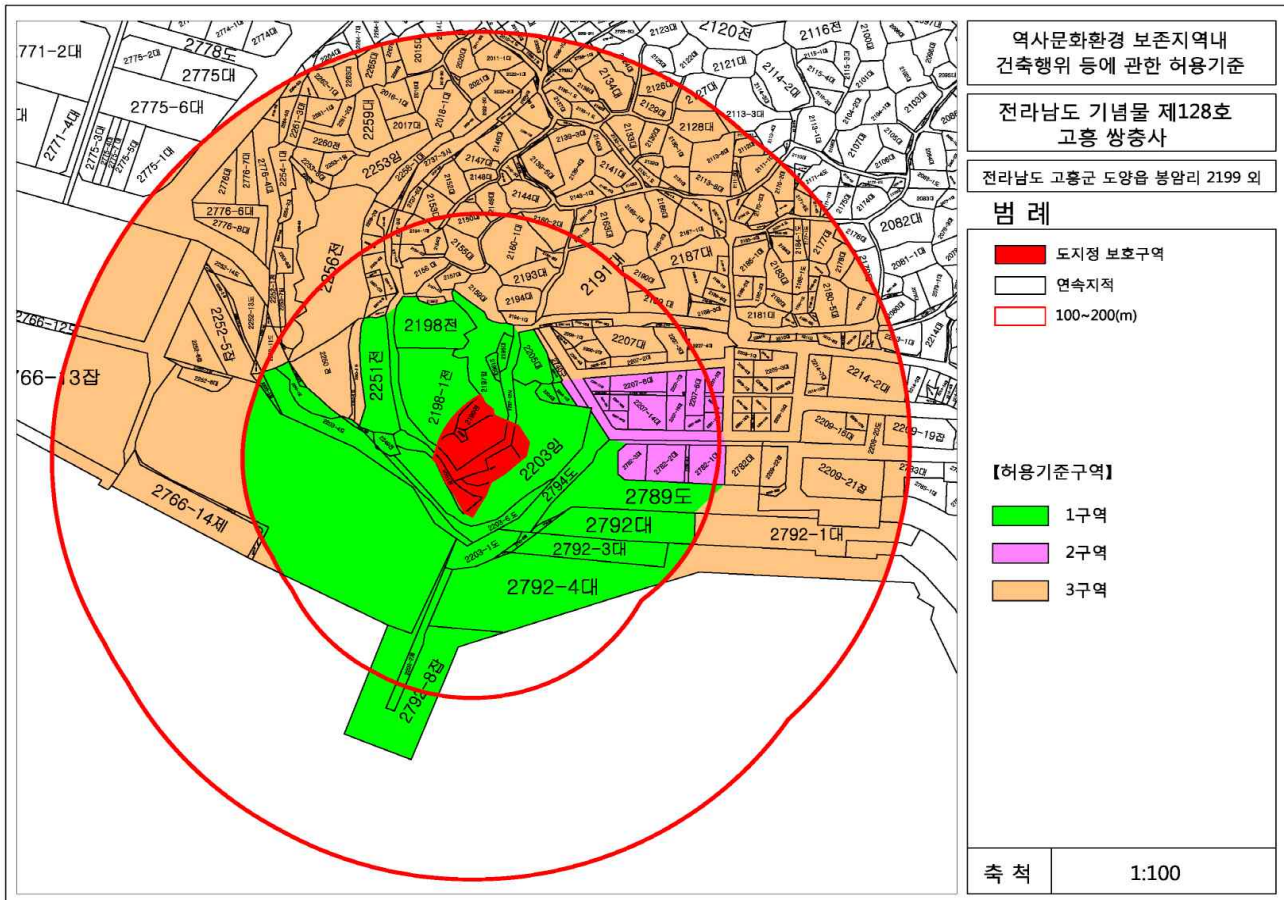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고흥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0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전라남도 기념물 제128호 고흥 쌍충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 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0m이하
3구역	■ 고흥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0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9-99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하였
기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2019-1- 전라남도-10	(사)한국 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12,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관 3층	신현청	○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기타 본회의 고유 목적에 의해 필요한 수익 사업	
2019-1- 전라남도-11	면양정 송순 기념사업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38번지, 3층	이현채	○ 면양정 송순 학문과 사상 및 학통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 선양 ○ 면양정 송순 회방연 재현 및 누정풍류축전을 통한 관광홍보 활동 ○ 기타 도의의 향상 발전과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 업 등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1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신규 등록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주)두일이엔씨	허형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21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충수압시험,기밀 또는 진공시험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제2019-1호	2019.10.15.
기 술 인 력	성 명	자 격 별	자격번호	비고	
	이영교	위험물산업기사	97407030114D	필수인력(주)	
	양홍석	자기비파괴검사기사	04201062078K	〃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김용욱	누설비파괴검사기사	08202090183C	필요한경우	
		자기파괴검사기능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폐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상호)	김*원 (주식회사 디앤에스종합건설)					
	주 소	전남 여수시 충무로 64, 8층(충무빌딩, 충무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무실) 미존치 사항 미보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지역계획과	담당자	정홍일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7322
		일 시	2019. 11. 20.(수) 14:0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담당관실)				
		주재자	소 속		법무담당관		
성 명			법제팀장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한이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9. 11. 20.(수) 14:00까지
- 제 출 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 제출방법

- 서 면(FAX) : 061-286-4802
- 우편접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 측량업 신규등록 현황

업 종	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일 반 측량업	04-004525	유한회사 아릅토목 (김지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3	2019. 10. 14.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고)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610331호)	주식회사 가온이알텍	박형재	전남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0	2019. 10. 10.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본점 및 지점 영업소재지 등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1. 처분대상

업 체 명	업 종 (등록번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비 고
(주)해룡건설	건축공사업 (05-07**)	박**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847*	

2. 위반내용 및 처분근거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보증가능금액) 미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 행정처분 : 등록말소

4.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 (담당자 정홍일 ☎ 061-286-7322)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당 사 자 : (유)푸르미르 추상기 외 6개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미보유)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처분(등록말소) 전 청문 실시
4.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처분대상자 참조)
5.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6.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7. 의견제출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8. 청문 실시 사항

청문당사자	등록번호	예정처분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소속(직)	성명
(유)푸르미르 (추상기)	전남-주택 2016-0013	등록말소	2019.11.6.(수) 14:00	전남도청 청문장 (행정동 12층)	법제팀 행정사무관	한이름
(주)도미안 (김범현)	전남-주택 2011-018	〃	2019.11.6.(수) 14:20	〃	〃	〃
(주)씨티개발 (서정창 외 1)	전남-주대 2016-0023	〃	2019.11.6.(수) 15:00	〃	〃	〃
(주)보배종합건설 (김현영)	전남-주택 2011-0050	〃	2019.11.6.(수) 15:20	〃	〃	〃
(유)한라이엔씨	전남-주대 2015-0057	〃	2019.11.6.(수) 15:40	〃	〃	〃
(주)수림 (박노홍)	전남-주택 2017-0047	〃	2019.11.6.(수) 16:00	〃	〃	〃
(주)로직하우징 (신원식)	전남-주택 2008-0001	〃	2019.11.6.(수) 16:40	〃	〃	〃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9-1795호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 및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7.

광주광역시장 · 전라남도지사

1. 목 적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여 시민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근 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연장)기간
 - 가. 광주광역시 : 기 건축허가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
 - 당초 : 2017. 12. 1 ~ 2019. 11. 30(2년간)
 - 변경 : 2017. 12. 1 ~ 2020. 11. 30(3년간)
 - 나. 장성군 : 건축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 2020. 11. 30
 - ※ 건축허가제한 종료일(2020. 11. 30)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건축허가제한 종료일은 특구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일로 한다.
4. 제한구역
 -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나. 면적 : 538,200㎡ (첨단3지구내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위 치	면적(㎡)	용도구역		비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외	
계	3,795,082	3,256,882	538,200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1,101,205	589,682	511,523	
장성군 진원면 산동라학림리, 남면 삼태라월정리 일원	2,693,877	2,667,200	26,677	

다. 경계 : 건축허가제한 구역도 참조(방문열람 요망)

5. 건축허가제한 대상(변경없음)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 대수선 및 재축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마.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6. 열람기간 : 2019. 10. 17. ~ 10. 31.(14일간)

7.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 북구 건축과, 광산구 건축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8. 문의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투자통상과(☎062-613-3891), 장성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90-7361),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31)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9-100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토목공사업 (150861)	명보건설주식회사 (송*훈)	전남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145	2019. 10. 15.
토목공사업 (150862)	흥성종합건설(주) (김*원)	전남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75	2019. 10. 15.
건축공사업 (150932)	흥성종합건설(주) (김*원)	전남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75	2019. 10. 15.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9-6호

전라남도의원의 주식매각 신고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 10. 17.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전라남도의회		직위	의원		성명	김기태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고려시멘트	11,970	매각	43,092	2019.6.7.	삼성증권	

목포시 고시 제2019-186호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17.

목포시장

1.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계획시설(고하도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략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관광과(061 - 270 - 8216)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2,150,786	2,150,786	-	-
조경시설	충무공기념공원 조경시설 1 고하공원	82,340	82,340	-	-
교양시설	이충무공유적지 선소(조선소) 성벽복원지(진성)	147,178	147,178	-	-
유희시설	오션테마파크 고급휴양시설	161,650	161,650	-	-
휴양시설	고하도콘도 고하도펜션 고하숲속펜션 휴양시설 1 해양레저시설 숲채원수련원 폴장&놀이동산 자연체험장	479,082	479,082	-	-
편익시설	판옥선조형물 전 망 대 고하나폴리 상업시설(선하지) 상업시설	81,308	81,308	-	-
관리시설	도 로 주 차 장(화장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배 수 지 케 도 VTS레이더	105,828.6	105,828.6	-	주차장7 (화장실) 중복결정
특수시설	진입광장 고하나폴리광장	13,998	13,998	-	-
교육연구시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94,116	94,116	-	-
녹 지	(해수부포함)	985,285.4	985,285.4	-	-

가. 유원지면적 (변경없음)

유원지명	면 적(㎡)	비 고
고하도유원지	2,150,786	

나. 시설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시설률(%)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유원지면적	2,150,786	2,150,786	-	100.0	100.0	-	
시 설 면 적	1,165,501	1,165,501	-	54.2	54.2	-	

다. 건축물 조서 (변 경)

구 분	시설구역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비 고
건축물	당초	1,165,501	90,906.87	255,225.8	7.80
	변경	1,165,501	90,528.87	254,847.8	7.77
	증감	-	감)378	감)378	-

○ 변경사유 : 주차장⑦시설 부지 내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화장실 설계에 따른 면적정정

라.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초	변경	
총 계		2,150,786	2,150,786	-	100.0	100.0	
소 계		82,340	82,340	-	1.5	1.5	
조경시설	충무공기념공원	10,412	10,412	-			
	조경시설 1	32,611	32,611	-			
	고하공원	39,317	39,317	-			
소 계		147,178	147,178	-	3.3	3.3	
교양시설	이충무공유적지	30,469	30,469	-			
	선소(조선소)	12,503	12,503	-			
	성벽복원지(진성)	104,206	104,206	-			
소 계		161,650	161,650	-	15.0	15.0	
유희시설	오션테마파크	142,754	142,754	-			
	고급휴양시설	18,896	18,896	-			
소 계		479,082	479,082	-	6.0	6.0	
휴양시설	고하도콘도	97,188	97,188	-			
	고하도펜션	134,143	134,143	-			
	고하숲속펜션	118,840	118,840	-			
	휴양시설 1	57,904	57,904	-			
	해양레저시설	5,275	5,275	-			
	숲체원수련원	35,615	35,615	-			
	폴장&놀이동산	13,201	13,201	-			
	자연체험장	16,916	16,916	-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초	변경	
소 계		81,308	81,308	-	2.7	2.7	
편익시설	판옥선조형물	200	200	-			
	고하니폴리	54,789	54,789				
	상업시설(선하지)	18,816	18,816				
	상업시설	7,503	7,503				
소 계		105,828.6	105,828.6	-	4.9	4.9	
관리시설	도 로	66,569	66,569	-			
	주 차 장 (화장실)	22,141.6	22,141.6	-			주차장7 화장실 중복결정
	하수처리장	650	650	-			
	중계펌프장	1,075	1,075	-			
	배 수 지	868	868	-			
	궤 도	14,275	14,275	-			
	VTS레이더	250	250	-			
소 계		13,998	13,998	-	0.7	0.7	
특수시설	진입광장	8,136	8,136	-			
	고하니폴리광장	5,862	5,862	-			
소 계		94,116	94,116	-	4.4	4.4	
교육연구시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94,116	94,116	-			
소 계		985,285.4	985,285.4	-	45.8	45.8	
녹 지	(해수부포함)	985,285.4	985,285.4	-			

마. 유원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 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총계				2,150,786	2,150,786	-	90,906.87	90,528.87	감)378	255,225.80	254,847.8	감)378	
소계				82,340	82,340	-	-	-	-	-	-	-	
조경 시설	107	충무공 기념공원	달동 781-3일대	10,412	10,412	-	-	-	-	-	-	-	
	113	조경시설 1	달동 1332 일대	32,611	32,611	-	-	-	-	-	-	-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107	고하공원	달동 793 일대	39,317	39,317	-	-	-	-	-	-	-	
소계				147,178	147,178	-	13,337.5	13,337.5	-	13,337.5	13,337.5	-	
교양 시설	108	이충무공 유적지	달동 산230일대	30,469	30,469	-	37.5	37.5	-	37.5	37.5	-	
	107	선소 (조선소)	달동 841-27일대	12,503	12,503	-	1,000.0	1,000.0	-	1,000.0	1,000.0	-	
	107	성벽복원지 (진성)	달동 산204-17일대	104,206	104,206	-	12,300.0	12,300.0	-	12,300.0	12,300.0	-	
소계				161,650	161,650	-	27,300.0	27,300.0	-	52,261.0	52,261.0	-	
유희 시설	113	오션 테마파크	달동 800-8일대	142,754	142,754	-	25,000.0	25,000.0	-	45,000.0	45,000.0	-	
	89	고급휴양 시설	달동 산186-1일대	18,896	18,896	-	2,300.0	2,300.0	-	7,261.0	7,261.0	-	
소계				479,082	479,082	-	28,680.0	28,680.0	-	147,315.0	147,315.0	-	
휴양 시설	107	고하도콘도	달동 838-1일대	97,188	97,188	-	7,400.0	7,400.0	-	70,000.0	70,000.0	-	
	108	고하도펜션	달동 산210-1일대	134,143	134,143	-	1,400.0	1,400.0	-	1,800.0	1,800.0	-	
	113	고하 숲속펜션	달동 817-33 일대	118,840	118,840	-	15,100.0	15,100.0	-	66,200.0	66,200.0	-	
	107	휴양시설 1	달동 762-2일대	57,904	57,904	-	-	-	-	-	-	-	
	89	해양레저 시설	달동 산186-3일대	5,275	5,275	-	110.0	110.0	-	220.0	220.0	-	
	100	숲체원 수련원	달동 산188-1일대	35,615	35,615	-	3,850.0	3,850.0	-	6,788.0	6,788.0	-	
	100	폴장& 놀이동산	달동 산189-1일대	13,201	13,201	-	420.0	420.0	-	822.0	822.0	-	
	100	자연체험장	달동 산189-7일대	16,916	16,916	-	400.0	400.0	-	1,485.0	1,485.0	-	
소계				81,308	81,308	-	12,621.95	12,621.95	-	25,615.38	25,615.38	-	
편익 시설	100	관옥선 조형물	달동 산188-1일대	200	200	-	121.95	121.95	-	415.38	415.38	-	
	107	고하 나폴리	달동 959 일대	54,789	54,789	-	8,900	8,900	-	18,000	18,000	-	
	101	상업시설 (선하지)	달동 산192-18일대	18,816	18,816	-	3,000	3,000	-	6,000	6,000	-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100	상업시설	달동 845 일대	7,503	7,503	-	600	600	-	1,200	1,200	-	
소계				105,828.6	105,828.6	-	2,447.81	2,069.81	감378	5,560.07	5,182.07	감378	
관리 시설		도 로	달동 815-2일대	66,569	66,569	-	-	-	-	-	-	-	
		주차장 (화장실)	달동 산235-1일대	22,141.6	22,141.6	-	420	42	감378	420	42	감378	주차장 7 중복결정
	113	하수 처리장	달동 803-1일대	650	650	-	-	-	-	-	-	-	
	107	중계 펌프장	달동772-62, 900-1 일대	1,075	1,075	-	-	-	-	-	-	-	2개소
	107	배수지	달동 762-2일대	868	868	-	-	-	-	-	-	-	
	100	궤도	달동 산191-3일대	14,275	14,275	-	1,995.81	1,995.81		5,108.07	5,108.07		승강장
	101	VTS 레이더	달동 산 191-3 일대	250	250	-	32.0	32.0	-	32.00	32.00	-	-
소계				13,998	13,998	-	121.95	121.95	-	415.38	415.38	-	-
특수 시설	113	진입광장	달동 800-8 일대	8,136	8,136	-	-	-	-	-	-	-	-
	100	고하나폴리 광장	달동 927 일대	5,862	5,862	-	121.95	121.95	-	415.38	415.38	-	-
소계				94,116	94,116	-	6,397.66	6,397.66	-	10,721.47	10,721.47	-	-
교육 연구 시설	107	국립호남권 생물 자원관	달동 890 일대	94,116	94,116	-	6,397.66	6,397.66	-	10,721.47	10,721.47	-	-
소계				985,285.4	985,285.4	-	-	-	-	-	-	-	-
녹 지		(해수부 포함)	달동 793-31일대	985,285.4	985,285.4	-	-	-	-	-	-	-	-

바.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m)	(㎡)				
당초	중로	1류	1	20	287	7,016	일반도로	달동 1332	달동 815-2	
당초	중로	3류	1	12	752	8,983	〃	달동 817-18	달동 793-137전	
당초	중로	3류	3	12	1,269	15,174	〃	달동 792도	달동 959구	3-1분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m)	(㎡)				
당초	중로	3류	2	12	37	443	일반도로	달동 산194-3	달동 907답	
당초	소로	1류	1	10	209	2,054	〃	달동 산197-3	달동 산193-2	
당초	소로	1류	2	10	95	981	〃	달동 787-25도	달동 785대	3-2 폭원변경
당초	소로	2류	1	8	788	7,628	〃	달동 815-2	달동 793-11	
당초	소로	2류	2	8	474	3,773	〃	달동 791-1전	달동 755-17전	
당초	소로	2류	3	8	216	1,821	〃	달동 802-11	달동 811	
당초	소로	2류	4	8	212	1,666	〃	달동 803-9	달동 782-10도	
당초	소로	2류	5	8	231	1,757	〃	달동 755-9	달동 753-4	
당초	소로	3류	3	3	1,378	4,205	〃	달동 817-38전	달동 850-2도	3-3,3-4합병
당초	소로	3류	7	5	264	1,313	〃	달동 793-54도	달동 762-2임	
당초	소로	3류	8	10-3	417	2,485	〃	달동 768-25전	달동 850-2도	
당초	소로	3류	9	6	101	618	〃	달동 산192-9임	달동 산193-2임	
당초	소로	3류	10	6	920	5,520	〃	달동 845-5잡	달동 산186-1임	
당초	소로	3류	11	6	45	279	〃	달동 산186-3임	달동 산186-1임	
당초	소로	3류	12	4	213	853	〃	달동 산189-7임	달동 산189-1임	

여수시 고시 제2019-29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0. 17.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봉산동 605-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528, 530, 531)사업
 - 나. 명 칭 : 봉산동 자동차 매매상사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4,061㎡ → 변경 3,369㎡(감 691)
 - 나. 규 모

규 모				기능	연 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총연장	금회시행				
소로	2	528	8	국지 도로	282	282	봉산동 605-4대	봉산동 354-1대	일반 도로	
소로	2	530	8	국지 도로	51	51	봉산동 200-3도	봉산동 523대	일반 도로	
소로	2	531	8	국지 도로	49	49	봉산동 200-2도	봉산동 517대	일반 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2. 3. 13.~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28	8	국지 도로	282	소2-530 봉산동605-4대	소2-521 봉산동354-1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528	8	국지 도로	282	소2-530 봉산동605-4대	소2-521 봉산동354-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30	8	국지 도로	51	중1-8 봉산동200-3도	소2-526 봉산동395-5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530	8	국지 도로	51	중1-8 봉산동200-3도	소2-526 봉산동395-5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31	8	국지 도로	49	중1-8 봉산동200-2도	소2-528 봉산동517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531	8	국지 도로	49	중1-8 봉산동200-2도	소2-528 봉산동517대	일반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528	소로 2-528	· 도시계획선형 변경	· 도로구역 지적분할 경계에 맞춰 도시계획 선형 일부 정정	
소로 2-530	소로 2-530	· 도시계획선형 변경	· 도로구역 지적분할 경계에 맞춰 도시계획 선형 일부 정정	
소로 2-531	소로 2-531	· 도시계획선형 변경	· 도로구역 지적분할 경계에 맞춰 도시계획 선형 일부 정정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여수시 봉산동	605-4	대	35	3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605-4	대	35	35		여수시	
2	여수시 봉산동	605-3	대	25	2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605-3	대	6	-		여수시	
		605-14	대	19	19		여수시	
3	여수시 봉산동	570-9	대	47	47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70-9	대	47	47		여수시	
4	여수시 봉산동	565-1	대	38	38		여수시	
		565-1	대	38	38		여수시	
5	여수시 봉산동	567-1	답	4	4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67-1	답	4	4		여수시	
6	여수시 봉산동	566	도	228	22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66	도	228	228		여수시	
7	여수시 봉산동	550-2	대	6	6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50-2	대	6	6		여수시	
8	여수시 봉산동	547-1	대	118	11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47-1	대	12	-		여수시	
		547-2	대	106	106		여수시	
9	여수시 봉산동	541-1	대	71	71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41-1	대	71	71		여수시	
10	여수시 봉산동	542-1	대	76	76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42-1	대	76	76		여수시	
11	여수시 봉산동	528	대	145	14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8	대	45	-		여수시	
		528-2	대	5	-		여수시	
		528-1	대	95	95		여수시	
12	여수시 봉산동	522-1	대	10	10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2-1	대	10	10		여수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3	여수시 봉산동	527-1	대	106	106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7-1	대	106	106		여수시	
14	여수시 봉산동	523	대	89	89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3	대	18	-		여수시	
		523-1	대	71	71		여수시	
15	여수시 봉산동	520-10	대	5	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0-10	대	5	5		여수시	
16	여수시 봉산동	520-11	답	160	160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0-11	답	19	-		여수시	
		520-16	답	141	141		여수시	
17	여수시 봉산동	520-12	대	8	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0-12	대	8	8		여수시	
18	여수시 봉산동	520-13	대	5	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0-13	대	5	5		여수시	
19	여수시 봉산동	520-2	대	109	109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0-2	대	7	-		여수시	
		520-15	대	55	-		여수시	
		520-14	대	47	47		여수시	
20	여수시 봉산동	519-1	대	144	144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19-1	대	16	-		여수시	
		519-3	대	128	128		여수시	
21	여수시 봉산동	517	대	453	45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17	대	48	-		여수시	
		517-2	대	51	-		여수시	
		517-3	대	54	-		여수시	
		517-1	대	300	300		여수시	
22	여수시 봉산동	512-1	대	3	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12-1	대	3	3		여수시	
23	여수시 봉산동	511-1	대	216	216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11-1	대	43	-		여수시	
		511-2	대	173	173		여수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4	여수시 봉산동	367-2	대	2	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7-2	대	2	2		여수시	
25	여수시 봉산동	367-1	답	165	16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7-1	답	10	-		여수시	
		367-4	답	10	-		여수시	
		367-3	답	145	145		여수시	
26	여수시 봉산동	369-1	대	2	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9-1	대	2	2		여수시	
27	여수시 봉산동	365-1	대	45	4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5-1	대	45	45		여수시	
28	여수시 봉산동	364-1	대	38	3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4-1	대	38	38		여수시	
29	여수시 봉산동	360-1	대	132	13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60-1	대	9	-		여수시	
		360-2	대	123	123		여수시	
30	여수시 봉산동	357-1	대	33	3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7-1	대	33	33		여수시	
31	여수시 봉산동	356-1	대	78	7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6-1	대	5	-		여수시	
		356-2	대	73	73		여수시	
32	여수시 봉산동	355	대	63	6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5	대	6	-		여수시	
		355-1	대	57	57		여수시	
33	여수시 봉산동	354	대	80	80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4	대	27	-		여수시	
		354-2	대	53	53		여수시	
34	여수시 봉산동	353-7	대	2	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3-7	대	2	2		여수시	
35	여수시 봉산동	76-31	도	16	16		건설부	
	여수시 봉산동	76-31	도	16	16		건설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36	여주시 봉산동	76-33	도	23	23		건설부	
	여주시 봉산동	76-33	도	23	23		건설부	
37	여주시 봉산동	76-35	도	37	37		건설부	
	여주시 봉산동	76-35	도	37	37		건설부	
38	여주시 봉산동	76-39	도	41	41		건설부	
	여주시 봉산동	76-39	도	41	41		건설부	
39	여주시 봉산동	354-1	대	16	16		여주시	
		354-1	대	16	-		여주시	삭제
40	여주시 봉산동	353-5	도	2	2		여주시	
		354-1	대	2	-		여주시	삭제
41	여주시 봉산동	353-3	대	99	99		여주시	
		353-3	대	99	-		여주시	삭제
42	여주시 봉산동	605-13	대	26	26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605-13	대	26	26		여주시	
43	여주시 봉산동	570-3	대	109	109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70-2	대	29	-		여주시	
		570-11	대	80	80		여주시	
44	여주시 봉산동	570-10	답	100	100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70-10	답	100	100		여주시	
45	여주시 봉산동	568	대	76	76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68	대	39	-		여주시	
		568-1	대	37	37		여주시	
46	여주시 봉산동	549-1	대	13	13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49-1	대	13	13		여주시	
47	여주시 봉산동	529-1	대	9	9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29-1	대	9	9		여주시	
48	여주시 봉산동	531-3	대	30	30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531-3	대	30	30		여주시	
49	여주시 봉산동	200-3	도	200	200		여주시	
	여주시 봉산동	200-3	도	200	200		여주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0	여수시 봉산동	526	대	145	145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26	대	51	-		여수시	
		526-1	대	94	94		여수시	
51	여수시 봉산동	532-2	대	53	5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532-2	대	10	-		여수시	
		532-3	대	43	43		여수시	
52	여수시 봉산동	323-16	도	2	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23-16	도	2	2		여수시	
53	여수시 봉산동	323-15	대	7	7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23-15	대	7	7		여수시	
54	여수시 봉산동	200-2	도	203	20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200-2	도	203	203		여수시	
55	여수시 봉산동	323-3	도	72	72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23-3	도	72	72		여수시	
56	여수시 봉산동	324-2	구	83	5		건설부	
	여수시 봉산동	324-2	구	83	5		건설부	
57	여수시 봉산동	330-2	도	69	1		건설부	
	여수시 봉산동	330-2	도	69	1		건설부	
58	여수시 봉산동	359-1	대	28	2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9-1	대	28	28		여수시	
59	여수시 봉산동	353-8	도	6	6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3-8	도	6	6		여수시	
60	여수시 봉산동	358-1	대	1	1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358-1	대	1	1		여수시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여수시 고시 제2019-30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7.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읍촌면 월산리 69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 나. 명 칭 : 국도17호선~월산교차로(시도16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사업규모 : 기정 L=323m, B=15m → 변경 L=323m, B=18.5m
 - 나. 사업면적 : 기정 7,074㎡ → 변경 9,4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8. 3. 8. ~ 2020. 12. 31.
 - 변경 : 2018. 3. 8.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1	울촌면 월산리	1442-6	도	1,348	353		전라남도				기정
		1442-6	도	1,348	579		전라남도				변경
2	울촌면 월산리	1443-1	도	122	3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43-1	도	122	4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3	울촌면 월산리	1443-2	구	19	19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43-2	구	19	19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4	울촌면 월산리	691-1	도	546	381		국토교통부				기정
		691-1	도	546	409		국토교통부				변경
5	울촌면 월산리	1439-2	도	690	47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39-2	도	690	293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6	울촌면 월산리	1444	구	2,160	153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44	구	2,160	257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7	울촌면 월산리	701-1	도	578	578		전라남도				기정
		701-1	도	578	578		전라남도				변경
8	울촌면 월산리	1450-3	도	6,813	99		전라남도				기정
		1450-3	도	6,813	250		전라남도				변경
9	울촌면 월산리	1456	도	3,463	15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56	도	3,463	208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10	울촌면 월산리	1435-2	천	6,492	328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35-2	천	6,492	528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11	울촌면 월산리	1452	도	1,115	15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52	도	1,115	96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12 13	울촌면 월산리	677-4	대	116	62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죽현길 24	김유심				기정
		677-15	대	46	46	여수시					변경
		677-4	대	70	68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죽현길 24	김유심				변경
14 15 16 17	울촌면 월산리	1387-12	도	313	194		국토교통부				기정
		1387-12	도	32	32		국토교통부				변경
		1387-16	도	136	136		국토교통부				변경
		1387-17	도	87	1		국토교통부				변경
		1387-18	도	58	58		국토교통부				변경
18 19	울촌면 월산리	1437	잡	1,020	72	순천시 왕지3길 55, 103동1101호	오한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기정
		1437-5	잡	73	73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2-3504					변경
		1437	잡	947	20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2-3504	오한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울촌산단지점)	변경
20	울촌면 월산리	1437-3	장	480	14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2-3504	오한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울촌산단지점)	금회 추가
21 22	울촌면 월산리	677-3	대	298	125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677-3	정인엽				기정
		677-14	대	115	115	여수시					변경
		677-3	대	183	78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09-1102	최한주				변경
23 24	울촌면 월산리	677-7	도	10	1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677-3	최석호				기정
		677-16	도	1	1	여수시					변경
		677-7	도	9	1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09-1102	최한주				변경
25	울촌면 월산리	677-6	도	63	48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기정
		677-6	도	75	5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26	울촌면 월산리	677-2	대	46	46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382	허도순				기정
		677-2	대	46	46	전남 여수시 울촌면 서부로 1889-13	김완진				변경
27	울촌면 월산리	677-8	답	25	2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기정
		677-8	답	25	2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변경
28	울촌면 월산리	677	대	350	6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기정
		677-13	대	51	5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종석				변경
29	울촌면 월산리	677-11	잡	1,890	1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민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기정
		677-17	잡	6	6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삼일로 20	김민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변경
30 31	울촌면 월산리	1437-2	장	1,043	300	순천시 왕지3길 55, 103동1101호	오한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	기정
		1437-6	장	108	91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2-3504	오한신				변경
		1437-4	도	7	7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2-3504	오한신				변경
32	울촌면 월산리	1436	구	250	158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436-1	구	145	144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33 34 35 36	울촌면 월산리	304-1	도	2,130	2,012		전라남도				기정
		304-1	도	73	1		전라남도				변경
		304-6	도	3	3		전라남도				변경
		304-7	도	2,046	2,046		전라남도				변경
		304-8	도	8	8		전라남도				변경
37	울촌면 월산리	307-4	도	110	53		전라남도				기정
		307-11	도	39	39		전라남도				변경
38 39	울촌면 월산리	1426	답	3,429	1,178	순천시 원가곡길 75, 103동 606호	배정주				기정
		1426-19	답	1,204	1,091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순로 1038, 101-905	배정주	근저당권 /지상권	광양원에 농협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30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1426	답	2,225	22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순로 1038, 101-905	배정주	근저당권 /지상권	광양원예 농협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30	변경
40 41	울촌면 월산리	307-3	도	33	31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44	김광석				기정
		307-3	도	5	5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44	김광석				변경
		307-10	도	28	28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44	김광석				변경
42	울촌면 월산리	307-7	철	83	1		한국철도 시설공단				기정
		307-7	철	83	35		국토교통부				변경
43	울촌면 월산리	307-2	도	7	7	월산리307-2	최봉일				기정
		307-2	도	7	7	월산리307-2	최봉일				변경
44 45 46 47	울촌면 월산리	1387-11	도	94	33		국토교통부				기정
		1387-11	도	27	27		국토교통부				변경
		1387-13	도	9	9		국토교통부				변경
		1387-14	도	33	19		국토교통부				변경
		1387-15	도	25	25		국토교통부				변경
48 49	울촌면 월산리	1426-9	도	135	133		국토교통부				기정
		1426-9	도	5	5		국토교통부				변경
		1426-20	도	130	130		국토교통부				변경
50	울촌면 월산리	307-8	도	124	1		전라남도				기정
		307-12	도	1	1		전라남도				변경
51	울촌면 월산리	307-9	도	7	2		전라남도				기정
		307-13	도	3	3		전라남도				변경
52 53	울촌면 월산리	1426-10	도	108	16		여수시				기정
		1426-10	도	87	87		여수시				변경
		1426-21	도	21	21		여수시				변경
54 55	울촌면 월산리	1426-18	도	23	19		국토교통부				기정
		1426-18	도	5	5		국토교통부				변경
		1426-22	도	18	18		국토교통부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56	율촌면 월산리	677-1	도	492	492		전라남도				기정
		677-1	도	492	492		전라남도				변경
57	율촌면 월산리	1434	답	1,300	43	전남 순천시 삼산로 81, 103-1806 (용당동 동아아파트)	유순자				금회 추가
58	율촌면 월산리	653-4	임	601	56	대전시 유성구 배울2로 19, 906-704	최한주				금회 추가
59	율촌면 월산리	678-1	과	2,747	53	월산리 649	최종두				금회 추가
60	율촌면 월산리	1387-10	도	24	11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61	율촌면 월산리	1362-20	구	1,086	86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62	율촌면 월산리	313-6	도	12	12		여수시				금회 추가
63	율촌면 월산리	1363-3	도	63	22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64	율촌면 월산리	1406-18	답	3	3		여수시				금회 추가
65	율촌면 월산리	319-1	도	126	70		전라남도				금회 추가
66	율촌면 월산리	1421	구	536	10		농림축산 식품부				금회 추가
67	율촌면 월산리	1450	답	1,099	70	전남 여수시 무선1길 20, 101-1010 (선원동, 대주아파트)	김덕진				금회 추가
68	율촌면 월산리	1451	답	2,957	13	전남 순천시 연항로 55, 102-506 (연항동, 부영아파트)	강경부	근저당권자	순천농협	순천시 연항로 55	금회 추가
69	율촌면 월산리	1412-1	도	30	30		농림축산 식품부				금회 추가
70	율촌면 월산리	1426-11	도	16	4		여수시				금회 추가
71	율촌면 월산리	1427	구	420	23		농림축산 식품부				금회 추가
72	율촌면 월산리	1412	도	684	121		농림축산 식품부				금회 추가
73	율촌면 월산리	1413	구	555	167		농림축산 식품부				금회 추가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74	율촌면 월산리	1406-10	도	11	11		여수시				금회 추가
75	율촌면 월산리	1406-16	답	32	32		여수시				금회 추가
76	율촌면 월산리	1406-1	철	1,022	4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7	율촌면 월산리	1406-25	답	10	10		여수시				금회 추가
78	율촌면 월산리	1406-15	도	16	16		여수시				금회 추가
79	율촌면 월산리	1406-24	답	28	28		여수시				금회 추가
80	율촌면 월산리	1406-9	도	764	127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81	율촌면 월산리	1406-23	도	886	50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계		(36필지)			7,074						
계		(81필지)			9,483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지				성 명	주 소	권리인 종류	성 명	주 소	
1	울촌면 월산리	677-4	건물가옥		185.8㎡	김유심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죽현길 24				기정
			함석		44.7㎡						
			스레트		254.8㎡						
		677-4	건물가옥		185.8㎡	여수시					변경
			함석		44.7㎡						
			스레트		254.8㎡						
2	울촌면 월산리	677-3 (제1호)	건물가옥		149.5㎡	정인엽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677-3				기정
			바닥	무근CON'C	3㎡						
			함석		121.4㎡						
			스레트		146.7㎡						
		677-3 (제1호)	건물가옥		149.5㎡	여수시					변경
			바닥	무근CON'C	3㎡						
			함석		121.4㎡						
			스레트		146.7㎡						
3	울촌면 월산리	677-3 (제2호)	건물가옥		72.5㎡	정인엽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677-3				기정
			담장	블록	1.3㎡						
			스레트		40.5㎡						
		677-3 (제2호)	건물가옥		72.5㎡	여수시					변경
			담장	블록	1.3㎡						
			스레트		40.5㎡						
4	울촌면 월산리	677-2	건물가옥		34.4㎡	김병철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382				기정
			스레트		6㎡						
		677-2	건물가옥		34.4㎡	김병철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382				변경
			스레트		6㎡						
5	울촌면 월산리	1437	건물 홀강판		140㎡	오한신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55, 103동 1101호(왕지동, 두산위브아파트)				기정
			조립식판넬		459.4㎡						
			울타리		20m						
			컨테이너	동	2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지				성명	주소	관리인 종류	성명	주소	
		1437	건물 홀강판		140㎡	오한신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30, 112-3504 (엠코타운더프라하)	근저당 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율촌산단 지점)	변경
			조립식판넬		459.4㎡						
			울타리		20m						
			컨테이너	동	2						
6	율촌면 월산리	1439-2 1442-6	배롱나무	주	27	농림축산식 품부 전라남도					금회 추가
			은행나무	주	5						
			마늘비석	EA	1						
7	율촌면 월산리	1426	무명수		848.6㎡	배정주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1038, 101-905				금회 추가

여수시 공고 제2019-24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7.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 국동 647-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34)사업
 - 나. 명 칭 : 국동1통 L마트~국동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1,662㎡ → 변경 1,606㎡(감 56)
 - 나. 규 모 : L=164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 8. 31.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34	8	국지 도로	428	소2-577 봉산동 755-145도	소2-540 봉산동 803-1답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334	8	국지 도로	428	소2-577 봉산동 815-6도	소2-540 국동 647-8도	일반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334	소로 2-334	· 도시계획도로 면적 변경 - 기정 : 3,828㎡ - 변경 : 3,772㎡(감 56) · 기·종점 변경	· 종단계획고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종점 표기 오류 정정	

8. 공람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14일간)

9. 공람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국동	647-1	도	1,480	16	여수시	여수시			
	국동	647-1	도	1,480	16	여수시	여수시			
2	국동	755-145	도	2	2	임**	765-**			
	국동	755-145	도	2	2	여수시	여수시			
3	국동	647-8	도	58	58	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6**			
						송**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 **아파트 7동 4**호			
	국동	647-8	도	58	58	여수시	여수시			
4	국동	755-150	전	101	101	학교법인 호석학원	봉강동 20*-*			
	국동	755-150	도	101	101	여수시	여수시			
5	국동	647-7	대	41	41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2*-(국동)			
	국동	647-7	도	41	41	여수시	여수시			
6	국동	645-12	대	150	150	박**	6**-5	구봉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68(국동)	근저당권
	국동	645-12	도	150	150	여수시	여수시			
7	국동	645-13	대	47	47	김**	6**-6			
	국동	645-13	도	47	8	여수시	여수시			
8	국동	645-11	전	1	1	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5-**, 10*동10*호			
	국동	645-11	도	1	1	여수시	여수시			
9	국동	645-14	전	2	2	박**	6**-1			
	국동	645-14	도	2	2	여수시	여수시			
10	국동	756-6	전	392	392	장**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 6**-** **주택 2*호			
	국동	756-6	도	392	392	여수시	여수시			
11	국동	756-8	대	23	23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75*-*	여수수산업 협동조합	여수시 봉산동 100-7(서부지점)	근저당권
	국동	756-8	도	23	23	여수시	여수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국동	756-9	대	25	25	김**	7**-2			
	국동	756-9	도	25	25	여수시	여수시			
13	국동	756-3	도	15	15	안**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7**			
	국동	756-3	도	15	15	여수시	여수시			
14	국동	757-3	전	170	170	최**	7**			
	국동	757-3	도	170	170	여수시	여수시			
15	국동	759-4	도	6	6	장**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산길 **(국동)			
	국동	759-4	도	6	6	여수시	여수시			
16	국동	774-15	전	262	262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길 11-**(국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여수시지부)	근저당권
	국동	774-15	도	262	262	여수시	여수시			
17	국동	772-18	전	10	10	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67-1**			
	국동	772-18	도	10	10	여수시	여수시			
18	국동	772-19	전	126	126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 22*동 50*호(성사동, **안휴레스트)			
	국동	772-19	도	126	126	여수시	여수시			
19	국동	19-70	도	2	2	국	기획재정부			
	국동	19-70	도	2	2	국	기획재정부			
20	국동	772-16	잡	1	1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 22*동 50*호(성사동, **안휴레스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여수시지부)	근저당권
	국동	772-16	도	1	1	여수시	여수시			
21	국동	772-17	잡	1	1	윤**	전라남도 여수시 산월로 7**(국동)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여수시지부)	근저당권
	국동	772-17	도	1	1	여수시	여수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22	국동	803-3	구	33	33	국	국토교통부			
	국동	803-3	구	33	33	국	국토교통부			
23	봉산동	242-33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봉산동	242-33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24	봉산동	876-28	대	48	48	연**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봉산동)			
	봉산동	876-28	도	48	33	여수시	여수시			
25	봉산동	876-29	대	3	3	서**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1*동 2*호(선원동, **석유화학사택)			
	봉산동	876-29	도	3	1	여수시	여수시			
26	봉산동	865-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봉산동	865-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27	봉산동	874-16	대	15	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16	도	15	8	여수시	여수시			
28	봉산동	874-33	대	66	5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33	도	66	53	여수시	여수시			
29	봉산동	874-32	대	78	17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32	도	78	17	여수시	여수시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순천시 고시 제2019-19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7.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30-1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내용

종 류	명 칭	시설 및 규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연 장 (폭)	주 소	성 명	
자동차 정류장, 도로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	29,210	L=469m (35m)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교통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1. 9. 30.
		자동차 정류장 4호	25,709	-			
		대로 1-12호	3,501	L=469m (35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면적 등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면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합계						148,052	29,210						
1	순천	해룡	선월	915	도	36,242	93	도유지	전라남도				
2	"	"	"	921	공	16,247	60	도유지	전라남도				
3	"	"	"	920	천	43,626	81	도유지	전라남도				
4	"	"	"	136-42	도	840	12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	"	"	산30-15	임	12,622	1,836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6	"	"	"	산30-11	임	29,088	25,858	시유지	순천시				
7	"	"	"	산30-12	임	1,746	43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8	"	"	"	산30-13	수	118	84	국유지	국(환경부)				
9	"	"	"	93-1	전	1,182	2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0	"	"	"	산30-14	임	95	23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	"	"	"	691-2	도	156	17	국유지	국(건설부)				
12	"	"	"	48-1	대	901	16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3	"	"	"	48-1	대	377	7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4	"	"	"	136-43	임	2,991	43	국유지	국				무주 부동산
15	"	"	"	136-44	천	1,821	77	국유지	국				무주 부동산

순천시 공고 제2019-189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연향동 812-12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실시계획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연 장 (폭)	주 소	성 명	
연향동 812-12번지 일원	순천 정원자재유통 판매장 조성공사	시장, 도로	계	34,488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정원산업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시장 4호	32,478	-			
			대로 1-23호	2,010	L=170m (15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 집계표

○ 순천 정원자재유통판매장 조성공사

소유자별		지목별	계	답	도로	구거
국유지	필지		28	23	2	3
	면적		26,662	23,509	1,226	1,927
사유지	필지		6	6		
	면적		7,826	7,826		
총 계	필지		34	29	2	3
	면적		34,488	31,335	1,226	1,927

편입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시·동)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순천시 연향동	812-47 도	도로	1,225	1,225	국토교통부	국유지			
2	순천시 연향동	812-12 답	답	1,500	1,500	순천시	국유지			
3	순천시 연향동	812-11 답	답	116	116	순천시	국유지			
4	순천시 연향동	811-51 도	도로	8,403	1	국토교통부	국유지			
5	순천시 연향동	812-10 답	답	2,674	2,674.0	순천시	국유지			
6	순천시 연향동	812-9 답	답	1,749	1,749	순천시	국유지			
7	순천시 연향동	812-8 답	답	1,054	1,054	순천시	국유지			
8	순천시 연향동	812-7 답	답	2,428	2,428	순천시	국유지			
9	순천시 연향동	812-6 답	답	397	397	순천시	국유지			
10	순천시 연향동	813-15 답	답	736	472	여수시 둔덕동 464 둔덕주공아파트 13-503	박재섭			
11	순천시 연향동	813-14 답	답	800	483	순천시	국유지			
12	순천시 연향동	813-13 답	답	1,256	753	순천시	국유지			
13	순천시 연향동	813-12 답	답	1,197	705	순천시	국유지			
14	순천시 연향동	813-29 답	답	1,530	921	순천시	국유지			
15	순천시 연향동	813-10 답	답	1,292	772	순천시	국유지			
16	순천시 연향동	813-9 답	답	727	438	순천시	국유지			
17	순천시 연향동	813-8 답	답	1,002	625	순천시	국유지			
18	순천시 연향동	812-5 답	답	2,829	2,829	순천시	국유지			
19	순천시 연향동	812-4 답	답	515	515	순천시	국유지			
20	순천시 연향동	812-3 답	답	2,317	2,317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트 201-405	정명자			
소 계					21,974					

연번	소재지 (시·동)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1	순천시 연향동	812-2 답	답	1,163	1,163	매곡동 134-17	김영선			
22	순천시 연향동	812-1 답	답	1,658	1,658	매곡동 134-17	김영선			
23	순천시 연향동	813-7 답	답	2,000	1,199	순천시	국유지			
24	순천시 연향동	813-6 답	답	1,692	1,010	순천시	국유지			
25	순천시 연향동	813-5 답	답	1,309	802	순천시	국유지			
26	순천시 연향동	813-4 답	답	982	586	순천시	국유지			
27	순천시 연향동	813-3 답	답	2,020	1,218	여수시 화장동 740 주공아파트 205-403	김승환			
28	순천시 연향동	813-2 답	답	1,673	998	순천시 장평4길 92	이호영 외 1			
29	순천시 연향동	813-1 답	답	1,329	786	순천시	국유지			
20	순천시 연향동	818-21 구	구거	991	991	국토교통부	국유지			
31	순천시 연향동	818-14 구	구거	902	902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2	순천시 연향동	812-13 답	답	698	698	순천시	국유지			
33	순천시 연향동	818-13 구	구거	34	34	순천시	국유지			
34	순천시 연향동	813-30 답	답	780	469	순천시	국유지			
소 계					12,514					
총 계					34,488					

지장물 집계표

구 분	전주	통신주	관정	비닐 하우스	가건물	컨테이너	드럼통	통신 맨홀	이동식 화장실	광고판	가로등	신호등	표지병	교통 신호 제어기	수 목				비고
															매화	백일홍	철쭉	대추 나무	
단위	EA	EA	EA	동	동	동	EA	EA	EA	EA	EA	EA	EA	EA	주	주	주	주	
지장물	27	7	4	3	1	1	3	1	1	2	1	1	3	1	415	2,211	26	60	
가옥 (지장물)																			
계	27	7	4	3	1	1	3	1	1	2	1	1	3	1	415	2,211	26	60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위 치	전 주	전주	통신주	관정	비닐 하우스	가건물	컨 테 이 너	드 럼 통	통신 맨홀	이동식 화장실	광 고 판	가 로 등	신 호 등	표 지 병	교통 신호 제어기	수 목				비 고
			관리번호															매화	백일홍	철쭉	대추 나무	
1	순천시 연향동	818-14 구	2380Z 951	1		2																
2		813-15 답																32		1	60	
3		813-13 답, 813-14 답		1															900			
4		813-30 답	2380Z 941	1																		
5		813-10 답																203				
6		813-9 답	2480R 031	1																		
7		813-9답, 813-8답, 813-7답	A=2,424㎡ (B=24, H=100)				1			1												
8		818-1 구	2480R 343	1																		
9		818-1 구	2480R 443	1																		
10		818-1 구	2480R 541	1																		
11		818-1 구	2480R 341	1																		
12		819 도	2480R 342	1																		
13		818-1 구	2480R 251	1																		
14		819 도				1																
15		818-1 구	2480R 261	1																		
16		818-1 구	2480R 271	1																		
소 계				12		3	1			1								235	900	1	60	
17	순천시 연향동	812-1 답, 812-2 답																	1,311			
18		818-1 구	2480R 282	1																		
19		818-1 구				1																
20		798-40 도	2480R 281	1	1																	
21		812-47 도	2480R 181	1	1																	
22		818-21 구	2480R 182	1																		
23		812-47 도	2480R 072	1	1																	
24		812-47 도	2480R 071	1	1																	
25		812-47 도	2480Z 973	1																		
26		812-8 답, 812-9답	A= 1,451.5㎡ (B=15,H=95)				1			2												

일련 번호	소재지	위 치	전 주	수 목																비 고			
			관리번호	전주	통신주	관정	비닐 하우스	가건물	컨 테 이 너	드 럼 통	통신 맨홀	이동식 화장실	광 고 판	가 로 등	신 호 등	표 지 병	교통 신호 제어기	매화	백일홍		철쭉	대추 나무	
																							EA
27		812-9답, 812-10 답, 812-47도, 818-14구	A= 2,480.5㎡ (B=26,H=96)				1																
28		812-47 도	2380Z 972	1																			
29		812-47 도	2380Z 971	1	1																		
30		812-47 도									1												
31		812-47 도							1	1													
소 계				9	5	1	2	1	1	2	1								1311				
32	순천시 연향동	812-47 도	2380Z 876	1	2																		
33		812-13 답	2380Z 861	1																			
34		812-46 도										1											
35		812-13 답	2380Z 862	1																			
36		812-44 답		1																			
37		812-44 답		1																			
38		812-46 도											1										
39		818-20 구												1			3			25			
40		818-20 구													1								
41		818-20 구	2380Z 877	1														1					
42		818-20 구														1							
43		812-11 답, 812-12 답																	180				
소 계				6	2							1	2	1	1	3	1	180		25			
총 계				27	7	4	3	1	1	3	1	1	2	1	1	3	1	415	2,211	26	60		

순천시 공고 제2019-189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연향동 813-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내용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주 소	성 명	
연향동 813-1번지 일원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노외주차장 124	48,513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국가정원운영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총괄

(단위 : m², 세부조서 별첨)

구 분		계	지 목 별			비고
			답	도로	구거	
계	필지	58	53	1	4	
	면적	48,513	45,787	96	2,630	
국 유 지	필지	5	-	1	4	
	면적	2,726	-	96	2,630	
사 유 지	필지	53	53	-	-	
	면적	45,787	45,787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총면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순천시 연향동	813-1	답	사유지	1,329	543	순천시 용당동 219 삼성아파트 10-1002	차정훈	
							순천시 인제동 100-2	차춘기	
2	순천시 연향동	813-2	답	사유지	1,673	675	순천시 장평4길 92	이호영	
3	순천시 연향동	813-3	답	사유지	2,020	802	여수시 화정동 740 주공아파트 205-403	김승환	
4	순천시 연향동	813-4	답	사유지	982	396	순천시 중앙동 61-19	김종영	
5	순천시 연향동	813-5	답	사유지	1,309	507	순천시 중앙동 61-19	김종영	
6	순천시 연향동	813-6	답	사유지	1,692	682	광양시 금호동 624-7 매화아파트 15-105	손용철	
							광양시 금호동 624-7 매화아파트 15-105	주영숙	
7	순천시 연향동	813-7	답	사유지	2,000	801	순천시 연향동 197	신천식	
8	순천시 연향동	813-8	답	사유지	1,002	377	순천시 연향동 197	신천식	
9	순천시 연향동	813-9	답	사유지	727	289	순천시 연향동 197	신천식	
10	순천시 연향동	813-10	답	사유지	1,292	520	순천시 조례동 1607 동신아파트 203-501	서현숙	
11	순천시 연향동	813-12	답	사유지	1,197	492	여수시 주삼동 812-2	조장훈	
12	순천시 연향동	813-13	답	사유지	1,256	503	순천시 조곡동 118-11	유병일	
13	순천시 연향동	813-14	답	사유지	800	317	순천시 조곡동 118-11	유병일	
14	순천시 연향동	813-15	답	사유지	736	99	여수시 둔덕동 464 둔덕주공아파트 13-503	박재섭	
15	순천시 연향동	813-29	답	사유지	1,530	609	광양시 중동 1682 태영2차아파트 204-606	김선애	
16	순천시 연향동	814-1	답	사유지	407	407	순천시 인제동 100-2	차춘기	
17	순천시 연향동	814-2	답	사유지	2,658	2,658	순천시 연향동 1658 블루시안아파트 102-1101	박평순	
18	순천시 연향동	814-3	답	사유지	2,529	2,529	순천시 원연향길 100	오길록	
19	순천시 연향동	814-5	답	사유지	473	47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20	순천시 연향동	814-6	답	사유지	1,752	1,752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21	순천시 연향동	814-7	답	사유지	212	212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22	순천시 연향동	814-8	답	사유지	1,038	1,038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07-14	신근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총면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3	순천시 연향동	814-9	답	사유지	1,491	1,491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07-14	신근호	
24	순천시 연향동	814-10	답	사유지	337	337	순천시 봉화2길 119, 102-1006	이남규	
25	순천시 연향동	814-11	답	사유지	678	678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51 우리타운에이-304	박진순	
26	순천시 연향동	814-12	답	사유지	496	496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51 우리타운에이-304	박진순	
27	순천시 연향동	814-13	답	사유지	645	645	광양시 태인동 388	이옥희	
28	순천시 연향동	814-14	답	사유지	1,365	1,365	순천시 행동 97-1	정복순	
29	순천시 연향동	814-15	답	사유지	992	992	순천시 행동 97-1	이기석	
30	순천시 연향동	814-16	답	사유지	1,081	1,081	순천시 연향동 1344 현대아파트 205-604	장인경	
31	순천시 연향동	814-17	답	사유지	664	664	군포시 금정동 876 울곡아파트 343-1103	박성규	
32	순천시 연향동	814-18	답	사유지	925	925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2 부영아파트 902-1205	김승자	
33	순천시 연향동	814-19	답	사유지	329	243	순천시 매곡동 203	김경규	
34	순천시 연향동	814-20	답	사유지	496	370	순천시 매곡동 203	김경규	
35	순천시 연향동	814-21	답	사유지	632	473	순천시 매곡동 203	김경규	
36	순천시 연향동	814-35	답	사유지	331	331	순천시 연향동 1514 대주파크빌 101-105	배길진	
37	순천시 연향동	815-1	답	사유지	1,881	1,881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4블럭 1롯데 창덕에버빌 203-1502	이금희	
							광양시 중동 1434 중대2주공아파트 105-101	김순미	
38	순천시 연향동	815-2	답	사유지	1,091	1,091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39	순천시 연향동	815-3	답	사유지	3,002	3,002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40	순천시 연향동	815-4	답	사유지	364	364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7-304	박형숙	
41	순천시 연향동	815-5	답	사유지	2,638	2,638	순천시 매곡1길 39	오옥순	
42	순천시 연향동	815-6	답	사유지	254	254	순천시 매곡동 160	오옥순	
43	순천시 연향동	815-7	답	사유지	1,689	1,689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66	이외숙	
							순천시 별량면 상림길 145	이명덕	
44	순천시 연향동	815-8	답	사유지	529	529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66	이명덕	
45	순천시 연향동	815-9	답	사유지	929	929	순천시 조례뚝등길 5, 204-503	신선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총면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46	순천시 연향동	815-10	답	사유지	724	724	순천시 조례뚝길 5, 204-503	신선식	
47	순천시 연향동	815-11	답	사유지	982	982	순천시 용당동 570 동아아파트 103-1504	설창학	
48	순천시 연향동	815-12	답	사유지	529	529	순천시 용당동 570 동아아파트 103-1504	설창학	
49	순천시 연향동	815-13	답	사유지	1,382	1,382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67	윤태한	
50	순천시 연향동	815-14	답	사유지	1,091	1,091	순천시 연향동 116	양현심	
51	순천시 연향동	815-15	답	사유지	1,402	1,034	순천시 연향동 116	양현심	
52	순천시 연향동	815-30	답	사유지	367	367	순천시 용당동 570 동아아파트 103-1504	설창학	
53	순천시 연향동	815-31	답	사유지	529	529	순천시 매곡2길 38	오옥순	
54	순천시 연향동	818-1	구	국유지	25,325	14		국(건설교통부)	
55	순천시 연향동	818-17	구	국유지	963	944		국(농림부)	
56	순천시 연향동	818-25	구	국유지	931	911		국(건설교통부)	
57	순천시 연향동	818-28	구	국유지	783	761		국(건설교통부)	
58	순천시 연향동	819	도	국유지	4,215	96		국(건설부)	
합 계		58필지			90,676	48,513			

지장물 조서 총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한 전 주	주	2	
비닐하우스	동	1	
건 물	동	1	지하수관정
백 일 홍	주	338	
매 실 나 무	주	570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 사 업 명 :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성명	주 소	
1	순천	연향	818-25	한전주		1	주	(국)건설교통부		2480R032
2	순천	연향	813-10	한전주		1	주	서현숙	순천시 조례동 1607 동신아파트 203-501	2480R031
				매실 나무		84	주			
3	순천	연향	813-8	비닐 하우스	철골비닐 (99.60*24.20)	2,410	m ²	신천식	순천시 연향동 197	
4	순천	연향	818-28	건물 (관정)	조적조 (4.0*3.0)	12	m ²	(국)건설교통부		
5	순천	연향	813-14	백일홍		338	주	유병일	순천시 조곡동 118-11	
6	순천	연향	813-15	매실 나무		486	주	박재섭	여수시 둔덕동 464 둔덕주공아파트 13-503	

나주시 고시 제2019-149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나주시 고시 제2019-144호)으로 의제 협의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0. 17.

나주시장

1.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792), 도시과(061-339-89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10	석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19번지 일원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55번지 일원	130,366	-	130,36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0	석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대표지번 정정 341-19번지 → 341-55번지	• 지적 현황에 적합하도록 정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376	중로 1-01	374-16전	일반 도로		나주시 고시 제2018-122호(18.9.20)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376	중로 1-01	374-16전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사 유
변경	중로 2-1	중로 2-1	일부 구간 선형 조정	•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조정

2)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4-17번지 일원	14,206	-	14,206	나주시 고시 제2018-122호(18.9.20)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사 유
변경	2	경관녹지	· 변경 - 감110㎡, 증110㎡	·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감소 및 증가에 따른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4,146	감282	93,864	
A	금천면 석전리 364-1 일원	94,146	감282	93,864	

광양시 고시 제2019-2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0. 17.

광양시장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유
			유형	등급	면적(㎡)	
당초	광양 내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산13-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4,517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변경	광양 내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산13-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42,089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광양 내우	2020년 이후	4,000	사면정비 A=42,089㎡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함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5. 행위허가 등 사전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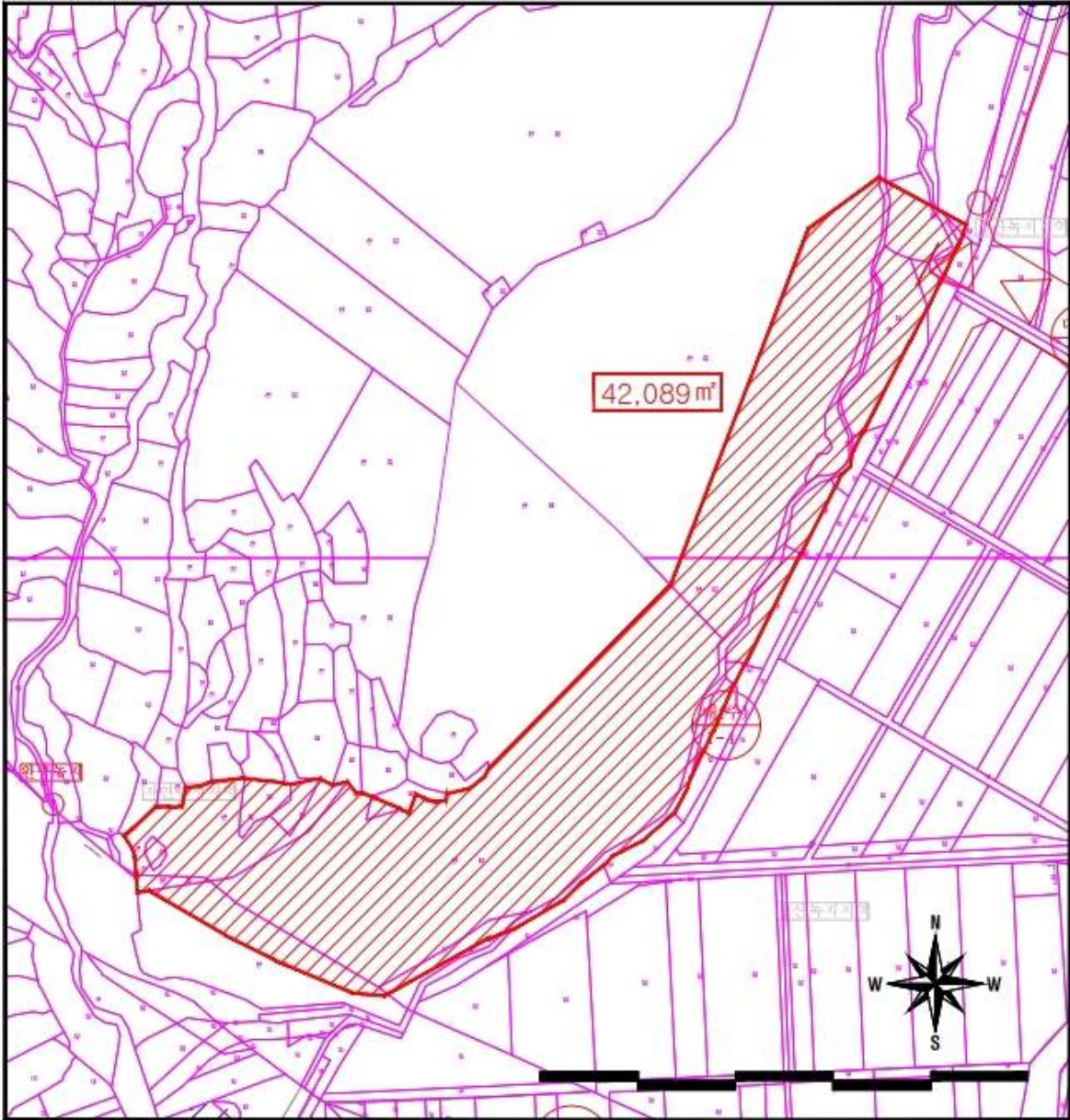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 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 2019. 10. 17.

7.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061-797-226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적지형도(광양 내우지구)

축척 : 1,000분의1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현황

지구명	광양 내우지구
지구유형	붕괴위험지구
위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산13-1번지 일원
지정일	2016. 12. 8. / 변경 2019. 9. .
지정사유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면적	42,089㎡
피해면적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등급

A 등급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 못한 붕괴가 발생하여도 피해가 미비
B 등급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C 등급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등급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등급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범례

지·군·구·읍·면·동	도로	하천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읍·면·동	국도	지방도	철도	기타	주요 시설	주요 시설	주요 시설

광양시 공고 제2019-197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7.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2호) 사업
 - 명 칭 :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 8,2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양시장(건설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변경)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건설과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9. 10. 17. ~ 2019. 10. 31.(14일간)
 - 장 소 :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건설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44) 및 건설과(☎061-797-3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광양시 진상면 일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56-2	도	1,511	19	국(건설부)	-	-	-	-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9	도	461	80	국(건설부)	-	-	-	-	
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11	도	137	5	국(건설부)	-	-	-	-	
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2-12	도	738	1	국(건설부)	-	-	-	-	
5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0	답	657	538	진주강씨 어사공파 22대조지회 손종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37	-	-	-	토지분할 지번,면적 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4	답	520	520	진주강씨 어사공파 22대조지회 손종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37	-	-	-	
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5-1	도	317	84	국(건설부)	-	-	-	-	
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	대	65	62	광양시	-	-	-	-	
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	대	169	167	광양시	-	-	-	-	
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1	대	198	198	광양시	-	-	-	-	
1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2	도	26	1	광양시	-	-	-	-	
1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6	답	249	248	광양시	-	-	-	-	
1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7	답	1,946	1,946	광양시	-	-	-	-	
1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19	답	321	321	광양시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5	답	222	32	김연수	전남 광양시 태금면 태인리 207	-	-	-	
1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7	도	120	2	국(건설부)	-	-	-	-	
1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8	도	214	8	국(건설부)	-	-	-	-	
17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1	답	232	230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토지분할 지번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43	답	230	230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18	기정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2	답	99	98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토지분할 지번변경
	변경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44	답	98	98	이현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8	-	-	-	
1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4	차	430	429	광양시	-	-	-	-	
2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35	잡	651	651	광양시	-	-	-	-	
2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1	답	936	936	서대석	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시2길 23	-	-	-	
2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2	답	419	419	양운모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5-22	-	-	-	
2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3	도	527	284	국(건설부)	-	-	-	-	
2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4	도	678	149	국(건설부)	-	-	-	-	
2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6-6	답	468	468	안성숙	전남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673	진상농업 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진상면신시길191	근저 당권	
									진상농업 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진상면신시길191	지상권	
2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97-0	답	349	341	광양시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2-1	구	48	28	광양시	-	-	-	-	
2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2-11	구	570	570	국(건설부)	-	-	-	-	
합	계	기정	28필지		12,639	8,315						토지분할 지번,면적 변경
		변경	28필지		12,618	8,297						

화순군 고시 제2019-128호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0. 17.

화순군수

1.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95	10	국지도로	117	화순읍 교리 211-19	화순읍 교리 212	일반 도로	-	전고제10호 (88.1.16)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	-	증)3,698	3,698		

2. 화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화순군 고시 제2019-129호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0. 17.

화순군수

1. 화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400	화순읍 교리 75-2	화순읍 훈리 47-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415	화순읍 교리 75-2	화순읍 훈리 47-1	일반 도로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읍 교리 84	28,390	감) 661	27,729	-	

2. 화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남군 고시 제2019-140호

해남 군관리계획(도서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일원의 해남 군관리계획(도서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 10. 17.

해남군수

1. 군관리계획(도서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서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 도서관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일원	1,670	감1,670	-	전남고시57호 (85.4.12)	

■ 도서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 도서관	- 도서관 폐지 -위치 :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일원 -면적 : 1,670㎡	통합적(다문화출산보육돌봄) 가족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을 폐지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도서관)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061-530-5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영암군 공고 제2019-1246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춘양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춘양도시계획도로) 사업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전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영암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39-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춘양 도시계획도로(소로 2-4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용형태	연장(m)		면적(㎡)		비고
		총연장	금회시행	총면적	금회시행	
소로2-46	국지도로	278	278	2,388	2,388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 공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다음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암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8. 공람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14일간)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토지대방)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계					3,811	2,388					
1	영암	남풍	38-6	답	7	7	영암농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길 5			
2	영암	남풍	38-7	답	264	264	영암농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길 5			
3	영암	남풍	39-13	전	347	347	영암농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길 5			
4	영암	남풍	39-11	전	210	210	김경창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0			
5	영암	남풍	39-8	창	173	173	김경창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0			
6	영암	남풍	39-10	전	15	15	영암농협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웃시암길 5			
7	영암	남풍	254-10	도	698	9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8	영암	춘양	676-5	도	372	19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9	영암	춘양	462-1	도	17	17	하행래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5			
10	영암	춘양	462-2	전	28	28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1	영암	동무	34-10	대	17	1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2	영암	동무	349-24	도	227	7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13	영암	동무	9-3	답	165	165	임상문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10			
14	영암	동무	10-2	대	510	34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5	영암	동무	11-17	답	330	330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6	영암	동무	11-15	답	254	254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7	영암	동무	13-10	대	120	120	오경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3-4(화정동)	203/843	월산새마을금고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640/843		
18	영암	동무	13-8	대	3	3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9	영암	동무	15-11	대	54	54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6/29		
							김순자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67-2	69/203		
							임애린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67-2	46/203		
							임영광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67-2	46/203		

영암군 공고 제2019-1247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역리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역리도시계획도로) 사업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전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영암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177-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역리 도시계획도로(소로 3-14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용형태	연장(m)		면적(㎡)		비고
		총연장	금회시행	총면적	금회시행	
소로3-16	국지도로	370	92	2,220	810	
소로3-14	국지도로	108	108	648	648	
소로3-92	국지도로	48	48	288	288	
계		526	244	3,158	1,746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 공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다음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암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8. 공람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14일간)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계					32,275	1,618					
1	영암	역리	171-6	답	125	125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	영암	역리	177-20	대	8	8	김성대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8 월계시영아파트 52-404			
3	영암	역리	178-21	전	1	1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21		
							박순례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30-2	42/189		
							최종원	광주시 서구 월산동 100-5 신우아파트 6동 404호	28/189		
							최종문	광주시 서구 월산동 110-5 신우아파트 6동 404호	28/189		
							최종운	광주시 서구 월산동 110-5 신우아파트 6동 404호	28/189		
							최종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61-50 102호	6/21		
4	영암	역리	346-4	대	51	51	김행자	영암군 영암읍 역리 346-1			
5	영암	역리	346-5	전	9	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6	영암	역리	347-25	답	414	414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7	영암	역리	339-1	전	12	12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8	영암	역리	338-4	전	5	5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9	영암	역리	347-27	답	167	167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0	영암	역리	338-3	전	155	155	이기화	영암군 영암읍 역리 340-1		영암농협	
11	영암	역리	340-10	대	1	1	이기화	영암군 영암읍 역리 340-1		영암농협	
12	영암	역리	337-4	대	131	131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3	영암	역리	347-18	답	209	20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4	영암	역리	347-24	도	15	15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5	영암	역리	177-11	도	531	16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16	영암	역리	478	도	27,560	148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17	영암	역리	171-2	도	106	82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18	영암	역리	347-13	도	2523	5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19	영암	역리	351-2	도	251	18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20	영암	역리	172-2	답	1	1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 공고 제2019-1248호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남풍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남풍도시계획도로) 사업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전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영암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풍 도시계획도로(중로 3-1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용형태	연장(m)		면적(㎡)		비고
		총연장	금회시행	총면적	금회시행	
중로3-1	집산도로	1,130	231	126,560	2,929	
소로3-78	국지도로	350	39	2,100	229	
계		1,480	270	128,660	3,158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 공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다음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암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8. 공람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14일간)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계					22,525	3,158					
1	영암	남풍	210-1	도	642	9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영암	남풍	208-8	전	141	141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3	영암	남풍	208-1	전	494	37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4	영암	남풍	208	대	1,051	6	대영아파트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7-4			
5	영암	남풍	208-6	도	74	74	김순례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102호	1/20		
							손남일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231	1/20		
							남풍리2구 마을회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맨션 105호	1/20		
							임철부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203호	1/20		
							황정목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205호	1/20		
							이미란	영암군 영암읍 백년동길 15 102동 505호(영신아파트)	1/20	군서농협	
							조춘자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303호	1/20		
							조신숙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305호	1/20		
							이금용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5-24 그린빌라 111동 402호	1/20		
							정의달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402호	1/20		
							하헌배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69	1/20		
							장판용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505호	1/20		
							정재성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356-3층	1/20		
							천인옥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602호	1/20		
							조한준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420 청송드림빌 상가동 102	1/20	오선화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5/20		
6	영암	남풍	208-2	전	99	9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7	영암	남풍	254-2	도	8,457	114	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8	영암	남풍	222-16	전	439	43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9	영암	남풍	222-19	전	533	533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0	영암	남풍	221-1	전	105	68	영암군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112번지			
11	영암	남풍	220-2	대	412	38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2	영암	남풍	220	대	119	93	김동균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26-1번지			
13	영암	남풍	233-1	대	107	99	백원기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22			
14	영암	서남	127-8	잡	119	104	김양수	광주시 북구 운암동 229 미라보 3차아파트 303동 1202호			
15	영암	서남	130-3	대	48	48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6	영암	서남	130-2	대	8	8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7	영암	남풍	208-7	도	154	121	김순례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102호	1/20		
							손남일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231	1/20		
							남풍리2구 마을회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맨션 105호	1/20		
							임철부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203호	1/20		
							황정묵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205호	1/20		
							이미란	영암군 영암읍 백년동길 15 102동 505호(영신아파트)	1/20	군서농협	
							조춘자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303호	1/20		
							조신숙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305호	1/20		
							이금용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5-24 그린빌라 111동 402호	1/20		
							정의달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402호	1/20		
							하헌배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69	1/20		
							장판용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505호	1/20		
							정재성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356-3층	1/20		
							천인옥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08 대영아파트 602호	1/20		
							조한준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420 청송드림빌 상가동 102	1/20	오선화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5/20		
18	영암	남풍	208-11	전	77	6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19	영암	남풍	216-5	대	84	77	그린주택건설(주)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49-12번지			
20	영암	남풍	222-1	도	6	3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1	영암	남풍	219-1	전	15	15	이관준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32-6번지			
22	영암	서남	127-7	대	149	145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3	영암	서남	144	도	8,755	10	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24	영암	서남	129	대	49	2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5	영암	서남	130	대	159	109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6	영암	남풍	216-4	대	63	63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7	영암	남풍	222-18	대	11	11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04-1202			
28	영암	남풍	222-17	전	155	155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 공고 제2019-1251호

영암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풍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공람 공고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45-6번지 일원에 영암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풍력) 사업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전 관계서류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17.

영암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 치 :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4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명 칭 : 영암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 설 명	공 사 개 요					비 고
	당 초		변 경			
	면 적(㎡)	풍력발전기	면 적(㎡)	풍력발전기	증감	
전기공급설비 (#1 ~ #20)	305,070	20기 (#1 ~ #20)	223,239	20기 (#1 ~ #20)	감)81,831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 수	준 공	
	기 정	변 경
2012. 9.	2014. 5.	2020. 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다음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영암풍력발전(주)

○ 주 소 : 전남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번지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8. 공람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14일간)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565-2	목	10,069	10,069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		565-4	목	11,854	11,85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		565-5	목	11,612	11,612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4		565-7	목	127	127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5		565-8	목	10	1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6		565-10	목	162	162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565-11	목	80	8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8		627-6	목	5,762	5,762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9		627-7	목	5,280	5,28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0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27-8	목	4,726	4,72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1		633-3	목	2,961	2,961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2		633-4	목	66	6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635-3	임	119	119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4		635-5	목	9,156	9,15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5		635-10	임	1	1	강진군 움천면 영산리 295	조주호 (10/5430)	-	-		
						강진군 움천면 영산리 365	조호근 (10/5430)	-	-		
						강진군 움천면 영산리 366	조준두 (10/5430)	-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5400/5430)	-	-		
16		635-13	목	10,743	10,74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7		635-14	목	11,094	11,09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18		645-6	목	3,538	3,538	서울 서초 양재천로19길10	영암이에스 에스(주),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645-14	목	15,277	15,277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0		645-21	목	3,786	3,786	서울 서초 양재천로19길10	영암이에스 에스(주),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1		645-22	목	12,516	12,51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2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45-23	목	12,044	12,04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3		645-25	목	9,846	9,84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4		651-2	목	2,415	2,415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891-14	목	561	561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6		891-17	목	2,364	2,36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7		891-18	목	11,103	11,10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8		891-21	목	4,041	4,041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9		891-24	목	9,270	9,27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0		891-25	목	1,025	1,025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영암군 금정면 한대리	891-26	목	12,552	12,552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32		891-27	목	2,330	2,33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근저당권 · 지상권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3		891-28	목	4,483	4,48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4		891-29	목	1,188	1,188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5		891-30	목	283	28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6		영암군 금정면 한대리	501-6	목	9,948	9,948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7		514-12	목	7,377	7,377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8		514-13	목	64	6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39		514-14	목	4,340	4,34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40		514-16	목	1,160	1,160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41		514-17	목	283	283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42		514-18	목	99	99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514-19	목	7,524	7,524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영암풍력 발전(주)	한화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 지상권	
								교보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종로1가)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합 계				223,239	223,239	-			-	-	-

함평군 공고 제2019-1055호

함평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사전 열람 공고

함평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7.

함평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보면 광암리 43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함평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사업
 - 나. 명 칭 : 용천사 관광개발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49,803㎡
 - 나. 규 모 : 도로 3개소, 주차장 2개소, 체육시설 1개소, 녹지 2개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함평군수(문화관광체육과)
 -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19. 10. 17. ~ 2019. 11. 6.
 - 나. 열람장소 :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 다. 의견서 제출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8. 관계도면 : “계제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도시재생팀(☎ 061-320-15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주소	성명
	(총 61 필지)				49,803						
1	해보면 광암리	317-2	전	1,345	1,345	공유지	함평군				
2	해보면 광암리	317-3	전	503	394	공유지	함평군				
3	해보면 광암리	320-1	전	1,477	1,477	공유지	함평군				
4	해보면 광암리	320-2	대	797	797	공유지	함평군				
5	해보면 광암리	321	전	3,934	3,934	공유지	함평군				
6	해보면 광암리	322	전	1,719	1,719	공유지	함평군				
7	해보면 광암리	323-1	전	3,312	648	조기순	신광면 함정리 389				
8	해보면 광암리	326	답	2,390	2,390	김용서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155				
9	해보면 광암리	327	전	1,805	1,765	김황산	해보면 광암리 212				
10	해보면 광암리	328	전	1,260	1,260	공유지	함평군				
11	해보면 광암리	329	대	997	33	노덕성	해보면 용천사길 102-8				
12	해보면 광암리	329-1	전	599	42	노덕성	해보면 용천사길 102-8				
13	해보면 광암리	329-3	전	225	37	노덕성	해보면 용천사길 102-8				
14	해보면 광암리	359	전	1,626	1,084	공유지	함평군				
15	해보면 광암리	360	전	2,377	2,280	공유지	함평군				
16	해보면 광암리	361	임	3,597	1,667	공유지	함평군				
17	해보면 광암리	361-1	전	2,818	427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해보면 광암리 415				
18	해보면 광암리	418-3	천	2,328	1,022	국유지	국(건설부)				
19	해보면 광암리	438-1	답	1,156	1,156	공유지	함평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주소	성명
20	해보면 광암리	438-2	답	2,040	2,040	공유지	함평군				
21	해보면 광암리	438-3	답	1,966	1,966	공유지	함평군				
22	해보면 광암리	438-4	답	1,799	1,799	공유지	함평군				
23	해보면 광암리	438-5	답	1,669	1,354	공유지	함평군				
24	해보면 광암리	438-6	도	32	32	공유지	함평군				
25	해보면 광암리	438-7	도	59	59	공유지	함평군				
26	해보면 광암리	438-8	도	84	84	공유지	함평군				
27	해보면 광암리	438-9	도	90	90	공유지	함평군				
28	해보면 광암리	438-10	답	47	47	공유지	함평군				
29	해보면 광암리	438-11	답	83	83	공유지	함평군				
30	해보면 광암리	438-12	답	77	77	공유지	함평군				
31	해보면 광암리	438-13	답	61	61	공유지	함평군				
32	해보면 광암리	439-1	답	1,052	14	공유지	함평군				
33	해보면 광암리	439-2	답	1,501	72	공유지	함평군				
34	해보면 광암리	439-3	답	1,444	87	공유지	함평군				
35	해보면 광암리	439-4	답	1,032	978	공유지	함평군				
36	해보면 광암리	439-5	답	1,523	1,523	공유지	함평군				
37	해보면 광암리	439-6	도	68	68	공유지	함평군				
38	해보면 광암리	439-7	도	78	78	공유지	함평군				
39	해보면 광암리	439-8	도	74	74	공유지	함평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주소	성명
40	해보면 광암리	439-9	도	68	68	공유지	함평군				
41	해보면 광암리	439-10	도	210	210	공유지	함평군				
42	해보면 광암리	439-11	답	60	60	공유지	함평군				
43	해보면 광암리	439-12	답	85	85	공유지	함평군				
44	해보면 광암리	439-13	답	67	67	공유지	함평군				
45	해보면 광암리	439-14	답	69	69	공유지	함평군				
46	해보면 광암리	439-15	답	89	89	공유지	함평군				
47	해보면 광암리	440-1	답	1,564	1,564	공유지	함평군				
48	해보면 광암리	440-2	답	1,365	1,233	공유지	함평군				
49	해보면 광암리	440-3	답	1,063	382	정일천	해보면 유정길 18				
50	해보면 광암리	440-10	도	216	60	공유지	함평군				
51	해보면 광암리	440-11	도	184	1	공유지	함평군				
52	해보면 광암리	440-19	답	22	22	공유지	함평군				
53	해보면 광암리	452	도	2,680	2,23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4	해보면 광암리	453	구	2,460	1,85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5	해보면 광암리	454	도	1,854	27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6	해보면 광암리	455	구	2,814	1,127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7	해보면 광암리	461	천	34,235	11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58	해보면 광암리	산42	임	16,562	1,473	장종명	해보면 해보리 256				
59	해보면 광암리	산43	임	3,273	3,273	광산김씨문숙공 파몽표후손종중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1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주소	성명
60	해보면 광암리	산44-1	임	25,785	693	함평이씨수담종 중	대동면 덕산리 174				
61	해보면 광암리	산48-1	임	667,541	1,022	대한불교조계종 용천사	해보면 광암리 415				